



Forum

목회자 性윤리, 어떻게 할 것인가?

2010년 12월 20일(월) 오후3시
청어람 3실

주최 / 교회개혁실천연대,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바른교회아카데미





목회자 性윤리, 어떻게 할 것인가?

2010년 12월 20일(월) 오후3시
청어람 3실

주최 / 교회개혁실천연대,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바른교회아카데미



행사 순서



시간	프로그램	진행 및 강연자
15:00-15:20	환영과 인사	이창호 목사 (바른교회아카데미 총무)
	인사말	이동원 목사 (지구촌교회)
15:20-15:50	주제발제 1	박성자 소장 (기독교여성상담소)
15:50-16:20	주제발제 2	박종운 변호사 (법무법인 소명)
16:20-16:50	주제발제 3	김승호 교수 (영남신학대학교 기독교윤리학)
16:50-17:20	주제발제 4	홍인종 교수 (장로회신학대학교 목회상담학)
17:20-18:00	질의응답	이창호 목사 (바른교회아카데미 총무)

목차



■ 주제발제

1. 교회 내 성폭력의 실태와 대책

박성자 소장 _ 기독교여성상담소

07

2. 국내 형사법적 관점에서 본 교회 내 성범죄

박종운 변호사 _ 법무법인 소명, 기독교법률가회

18

3. 목회자 성윤리 교육의 방향성

김승호 교수 _ 영남신학대학교 기독교윤리학

39

4. 목회자의 치유와 예방의 관점에서

홍인종 교수 _ 장로회신학대학교 목회상담학

48

■ 공동주최 단체 소개

56

교회 내 성폭력의 실태와 대책

박성자 | 기독교여성상담소 소장

1. 들어가는 말

우리 기독교여성상담소는 1998년 창립 이래 기독교 평신도 여성들의 문제들을 상담하면서 '교회 내 성폭력' 즉 목회자에 의한 여신도들의 성추행, 성폭력이라는 놀라운 사실에 직면하면서 교회 내 성폭력 추방을 위한 노력과 투쟁을 끊임 없이 해왔다.

그러나 12년이 지난 지금에도 교회 내 성폭력의 문제는 교회나 교단 측에서 해결을 위한 일말의 변화나 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다. 우리는 10년간 똑같은 교회 내 성폭력 추방을 위한 대안과 문제점을 제시하고 건의하여 왔다. 지난 10년 동안의 교회 내 성폭력에 대한 이해의 차이는 평신도들은 물론 여성단체들도 교회에서 성폭력이 일어난다는 사실이 충격적이고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제는 성폭력은 사회의 어느 직업이나 어떤 학문적 배경과는 상관없이 지위여하를 막론하고 가해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수준까지 온 것이다. 가해 목사들을 처벌할 위치에 있는 교단 측의 심의위원들도 어디까지나 자신에게도 가능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일이라서 인지 고소여성들의 상처와 고통에 대한 이해와 연민보다는 유혹자 내지는 스토커리는 생각으로 추궁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가 10여년 전에 교회 내 성폭력을 접하면서 여성단체들과 연합하여 "교회 내 성폭력 근절을 위해 한국교회에 보내는 건의문"을 제시하고 우리들의 요구사항을 요청하였던 바 하나도 성사된 것이 없다. 그렇더라도 우리는 교회 내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성폭력의 진상을 다시 한번 규명하고 실태를 알려서 그 해결책을 강구해 보고자 한다.

2. 교회 내 성폭력의 실태

기독교여성상담소의 통계를 보면 98년 7월부터 2003년 6월까지 교회 내 성폭력은 91건이었다. 이중 목회자 관련 성폭력은 84건으로 강간 50건, 성추행 30건, 성희롱을 포함한 기타 사건이 4건이었다. 신도간 성폭력은 7건으로 강간 4건, 성추행 3건이었다. 목회자 관련 성폭력 중 고소 사건은 9건으로 교단과 사회법에 모두 고소한 경우 4건, 교단에만 고소한 경우가 4건이다. 오히려 피해자들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경우도 2건이 있었다.

흔히 목회자와 관련된 성폭력은 사이버 종파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나 기독교여성상담소에 접수되는 경우 사이버종파의 비율은 두 세건 정도였고 모두 정통교단에서 성폭력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교단비율은 피해자들이 교단을 밝히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정확한 통계를 내기는 어려우나 대체로 특정한 교단에 상관없이 일어나고 있다.

성폭력이 일어나는 장소는 주로 당회장실, 기도실, 교육관 등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와 기도원이나 별도 기도처에서, 빙자하여 피해자의 집에서 당하는 경우도 있으며 때로는 러브호텔이나 여관, 호텔 등이 이용되기도 한다.

3. 교회 내 목회자 관련 성폭력의 유형

먼저 ‘교회 내 성폭력’과 ‘성적 비행’(Sexual Misconduct)에 대한 정의와 범위를 밝히고자 한다. 우리 상담소에서는 “교회 내 성폭력’이란 교회의 지도자나 목회자가 자신의 권위를 남용하여 신도나 고용된 목회자(부목사, 전도사)에게 성폭력(강간, 성추행, 성희롱)이나 간음 또는 그와 유사한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¹⁾ 한편 성직자의 ‘성적 비행’이란 단어의 사용은 보다 포괄적인 의미에서 ‘교회 내 성폭력’의 개념에다, 성직자의 일탈이나 성적 타락으로 인한 비윤리적 행위도 포함한다. 아울러 성직자 개인의 타락적 행위라 할 수 있는 포르노그래피를 본드던지 성직자가 혼자서 성적으로 비윤리적 행위를 하는 것을 포함한 모든 성직자의 비윤리적 성적 타락행위를 ‘성적 비행’의 범위로 정하고자 한다.

실제 기독교여성상담소에 접수된 목회자들의 성폭력 유형을 살펴보면 다양하다. 한 여성을 상대로 한 일탈의 경우로 로맨틱하고 지고지순형도 있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하기보다는 상대여성을 탓하고 발뺌하면서 성서를 오용하는 뻔뻔형이 대부분이다. 대부분의 성폭력 가해자들이 자신의 죄를 부인하는 것과 같이 성적 비행을 한 성직자들도 같은 행

1) 기독교여성상담소 편 *기독교인을 위한 성폭력 예방 지침서* 개정판 2005, p.11.

태를 보인다. 처음에는 부정하다가 나중에는 여신도가 자신을 유혹한 것처럼 책임을 전가하여 피해 여성에게 더 큰 상처를 주는 목회자가 대부분이다.

“저는 목사지만 정말 운이 나쁜 피해자일 뿐입니다. 나는 단지 그 연약한 성도의 문제를 해결해주려고 했던 것 밖에는 죄가 없습니다.”

“나와 아내와는 전혀 맞지 않는 부부예요. 평소에 대화도 잘 안되고 삶의 비전도 다르고 성생활도 전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여집사님을 만나고부터 오히려 목회의 소망이 생기게 되었어요. 저는 그녀와의 만남을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만약 목회를 못하게 되어도 할 수 없어요.”

한편 교회의 많은 여성 신도들을 상대로 성폭행을 자행하는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은 “먹이사냥형” 목회자²⁾는 수명의 여성들을 상대로 장기간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다.³⁾ 기혼 목회자가 자신의 아내는 사모로써의 자격이 없다거나, 곧 병으로 죽게 되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혼인을 빙자하여 젊은 여신도에게 접근하다 강간을 하는 목회자도 있다.⁴⁾

영아부에서 고등부에 이르는 주일학교 아동들에 대한 아동 성폭력, 대학생이나 청년들을 지도하면서 이중적인 관계를 맺는 목회자도 있다.⁵⁾ 우리 상담소에서는 이같은 사례를 교육 상담 빙자형이라고 칭하였고, 강제형(심방 중에 강제적으로 강간한 후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강요한 경우), 결혼 빙자형, 종교체험 빙자형(인수 기도해준다면 성추행한 경우), 치유 빙자형(죄를 씻기 위해서는 거룩한 목회자와 성관계를 해야 한다며 강간한 경우), 협박형(비디오로 녹화한 후 협박하며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강요한 경우 및 기타(교회 재정을 장악하기 위하여 회계업무를 맡고 있는 여사무원을 상습적으로 강간한 경우) 등 7가지로 분류하였다.⁶⁾

교회 내 성폭력이란 교회나 기독교 기관 등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 그 구성원 간에 발생하는 성폭력을 말한다. 주로 교회지도자가 자신의 권위를 남용하고 신도들의 취약성을 이용하여 성폭력이나 간음 또는 유사한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목회자 관련 성폭

2) Marie Fortune. *Nothing Sacred?*. Harper San Francisco, 1992. 이들 목회자를 '먹이사냥형' 이라고 부르고 있다. 2006년 봄에 우리 상담소로 세 명의 여성신도가 와서 신고하고 지금 사회법으로 재판 계류 중인 영산복지교회의 김 목사는 많은 교인들을 성폭행하고 희롱하면서 경제적으로 착취한 죄질이 고약한 먹이사냥형의 목회자이다. 그는 3차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2년으로 법정 구속되었다.(2008,10)

3) S교단 오 목사의 여신도 강간사건은 1998년 상담소로 신고, 1차 공청회피해자 증언한 사례인데 많은 여성교인과 피해자의 여동생도 같은 성폭력을 당한 사례이다. *기독교인을 위한 성폭력 예방 지침서* 39-40

4) 상담소에 접수된 목회자 성폭력 사례, 두 번째 사건 “호주한인교회의 윤 목사 사건”, <예방 지침서>. 40-41

5) Thomas G. Plante.(Ed.)(1999). *Bless me father for I have sinned: Perspectives on Sexual abuse committed by Roman Catholic priest*. Westport, Ct: Greenwood.

_____ and Arianna Aldridge, "Psychological Patterns Among Roman Catholic Clergy Accused of Sexual Misconduct." *Pastoral Psychology*, Vol. 54, No.1. September 2005. 73-80. 천주교 신부들의 많은 성적비행 중에서 아동성폭력을 가리켜 “성적 아동선호증”과 흑인아동선호증의 특징을 말하고 있다.

6) “교회 내 (목회자관련) 성폭력의 유형”, *기독교인을 위한 성폭력 예방 지침서*(2005), pp.14-17.

력은 그 피해가 지속적이며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다는 데에 그 심각성이 크다. 많은 피해자 여성신도들은 신고도 고소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여, 사실이 노출되는 경우에도 여성피해자는 인권을 보호받지 못하고 정신적 피해로 고통 받고 있다.

4. 교회 내 성폭력의 특징

1) 교회 내 성폭력은 목회자와 신도 간의 절대적인 위계관계 속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절대적 위계관계 속에서 목회자의 성폭력적 행위에 대해 이상하게 느끼면서도 거부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당한다.

2) 교회 내 성폭력은 명백하게 성폭력이라고 판단 할 수 없는 교묘한 장치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목회자는 자신을 영적 아버지라 칭하며 영적 아버지의 사랑의 표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표시와 동일하다고 강조한다. 그 성폭력이 소위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리는 목회자가 자신의 권위를 남용하여 성서를 오용하고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3) 교회 내 성폭력은 대부분 화간의 형태를 띤 강간인 경우가 많다. 목회자가 자신을 성폭력해도 그것을 폭력이라고 깨닫지 못하고 자신이 목회자를 그런 방식으로 섬기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주의 종을 기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으로 여긴다. 목사에게 큰 은혜를 입었다고 여기게 되는 것이 문제이다.

4) 발생이 용이한 점에 비하여 그 법적 해결은 매우 어렵다. 증거가 없어 처리가 어렵고 해결이 쉽지 않다. 여성피해자들의 경우 자신이 성폭력을 당한다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증거를 보전할 생각을 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또 지속적으로 당하게 되었다. 자신이 성폭력을 당했다는 인식을 했을 때는 공소시효가 지나버리고 증거도 없이 법의 보호를 받기가 어려워진다.

5) 교회의 분파싸움에 휩쓸려 피해자의 인권은 실종되는 경우가 많다. 피해사실이 드러난 후 피해자는 교회 내 분파에 휘말려 이용되다가 사탄 마귀로 정죄되어 교회에서 쫓겨나는 등 피해자의 인권보장이 힘들게 된다. 피해자가 교단에 호소하는 경우에도 현재로서는 해결이 쉽지 않다.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징계가 교회법으로 명문화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선교에 장애가 된다는 핑계로 문제를 덮어버리고자 하는 것이 현재의 목회자 성폭력을 대하는 교단과 교회의 정서이다. 그러나 아무리 선교가 중요하다 한들 선교를 빌미로 피해자의 인권을 차압할 수는 없는 것이다.

****교회 내 성폭력은 근친강간의 과정과 유사점을 공유한다.7)**

- ① 목회자의 성폭력은 항상 힘의 불균형이 존재한다. 피해자가 저항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교회를 떠나지 않고서는 목회자의 파워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이것은 자녀를 성폭행한 아버지에게 대해서 자녀가 저항하고 방지하도록 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 ② 목회자의 성폭력은 근친강간과 마찬가지로 가해 목회자와 피해자인 성도사이의 가장 가깝고 자주 접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 사이에는 신뢰감이 형성되어 있고 방어막이 별 필요 없는 친숙한 대상에게 그 경계선을 침범하는 것이다.
- ③ 피해자는 그 교회를 떠나기 전까지는 가해자인 목회자를 목회자로 부르고 대우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는 것도 부모자녀간의 근친강간과 비슷하다.
- ④ 피해자가 경험하는 수치감과 죄책감도 근친강간의 경우와 유사하다. 드러날 때 돌아오는 비난과 위험부담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범했다는 죄책감, 분노감, 혼란감이 있다. 화간의 경우는 자신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양가감정을 경험한다.(주의 종인데 내가 어떻게....)
- 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비밀을 지킬 것을 요구하거나 위협할 때, 피해자 자신이 수치감과 죄책감으로 자신의 탓으로 돌릴 때 비밀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도 근친강간과 유사하다. 그리하여 성폭력의 상처가 비언어화 되거나, 회피되거나, 억압되어질 때 피해자는 여러 가지 증상이 표출 될 수 있다.
- ⑥ 근친강간과 마찬가지로 교회 내 성폭력이 실제로 발견되는 경우는 빙산의 일각이다. 두 경우에서 다 발각될 때까지 오래 지속되는 영향이 있다.
- ⑦ 목회자에 의한 성폭력 희생자는 피해자가 이겨도 남는 것이 없다는 점에서 근친강간의 피해자와 유사하다. 아버지의 성폭력이 드러날 때 성폭행이 중단하는 것 이외에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로부터도 감정적 지지를 얻기보다는 미움이나 보복을 당할 수 있는 것처럼 교회 내 성폭력 피해자도 교회공동체로부터 지지를 받기보다는 교회에서 추방당하는 경우, 개인적인 피해 등 남는 것이 없다.
- ⑧ 가해자의 배우자가 묵인하거나 방임한다는 점에서 교회 내 성폭력과 닮은 점이 있다. 사모들의 묵인과 방임 문제를 서둘러 진화하고 은폐시키며, 명예훼손죄로 맞고소한다.

- * 목회자의 성폭력은 역기능적인 교회가족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근친강간'이다.
- * 목회자와 신도 간의 절대적인 위계관계에서 거부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당하게 된다.
- * 교회 내 성폭력은 대부분 화간의 형태를 띤 강간인 경우가 많다.
- * 교회내 성폭력은 교회의 분파싸움에 휩싸여 피해자의 인권은 실종되고 교회내 정치적인 싸움에 휘말리게 된다.
- * 교회 내 성폭력을 근친강간과 유사하다고 본다면 그 해결책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 친고죄적용을 탄력적으로 해야 한다고 본다(가정폭력, 성폭력 특별법 개정안).
- * 교회 내 성폭력을 단순 불륜이나 간통 혹은 화간 사건으로 다루려서는 안 되며, 힘의 불균형에 의한 '성폭력특별법 제11조 기타관계(목사와 여신도 또는 여사역자)로서 감독 및 보호를 받는 부녀를 위계로서 간음'이라는 죄명을 적용하여 성직자 성폭력으로 인정을 받아 성폭행 특별법으로 처벌되어지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7) 메리 포춘의 "목회자의 비행 목회적 관계에서의 성폭력" 위의 책에서 교회 내 성폭력과 근친강간의 유사성을 주장하고 있다.

5. 가해 목회자에 의한 성서의 오용과 자의적인 해석

교회 내 성폭력의 가장 큰 특징은 그 성폭력이 소위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리는 목회자의 권력의 남용과 그로 인한 성서의 오용과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주로 인용된 성경구절은 다음과 같다.

- 1) “야곱에게는 레아와 라헬이라는 두 명의 부인이 있었다. 레아는 야곱의 첫 부인이지만 야곱이 사랑한 사람은 둘째 부인 라헬이었다. 너는 야곱을 섬긴 라헬처럼 목사를 섬기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
- 2) “에덴동산이 어떤 곳이나? 그곳은 벗고 있어도 수치를 몰랐다. 영적인 사람은 벌거벗고 서로 보고 있어도 수치를 느끼지 않는다”
- 3) 베드로전서 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문안하라.”고 되어 있다며 “영적인 사람은 입도 맞추고 사랑을 나눌 수 있지만 일반 성도들과는 이같은 아름다운 행위를 나누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아직 육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 마음이 정말 성결하고 죄가 없으면 벌거벗고 살아도 수치를 느끼지 않을 것이다. 마음에 죄가 없고 육이 없으면 옷을 입을 필요가 없다”,
- 4)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해도 죄가 되지 않는 것처럼, 솔로몬이 2천명의 궁녀를 거느렸듯이 자기는 여인을 취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
- 5) 아브라함이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듯 가장 소중한 것을 주의 종에게 바치라.
- 6) “아담에게 돕는 배필 하와가 있었듯이 너는 내 돕는 배필이라. 결혼한 배우자가 모두 돕는 배필은 아니다.”

또한 성폭력 가해 목회자들은 자신의 가해사실이 교회에 알려지면 다음과 같은 말로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시키고 피해자를 비난합니다.

- 1)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했지만 죽을 때까지 왕노릇했다.
- 2)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모세가 이방여인을 취한 것에 대해 비난했기 때문에 문둥병에 걸렸다. 주의 종의 말을 안 듣거나 주의 종을 마음 아프게 하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
- 3) 주의 종의 잘못은 하나님이 벌하신다.
- 4) 피해자는 음란 마귀가 씌어 목회자를 포함하고 있다.
- 5) 여자들이 문제다. 그래서 성경에도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가?

6. 교회 내 성폭력 피해자의 후유증

목회자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들은 일반 성폭력 피해자들이 겪는 일반적 강간 후유증, 예를 들면 “나는 더럽혀졌다, 순결을 잃었다.”고 하는 순결이데올로기에 의한 상처 말고도 신앙적인 혼란을 겪는다. 피해자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에 의해 배신당했기 때문에 혼란스럽고 당황하며 스스로를 비난한다. 큰 혼란과 죄책감 속에서 심리적 위기가 신앙의 위기로 빠진다.

“하나님의 종이란 사람이 이럴 수 있는가?”하는 목회자에 대한 혼란과 불신이 급기야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주의 종에게 당했으니 하나님마저 나를 버린 것이 아닌가?”하는 신앙의 위기와 더불어 “나의 십자가이다.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신앙적 혼돈을 경험하게 된다.

신앙이 좋은 여대생이 자신의 교회로 많은 친구들을 전도하고 지난달 어머니까지 교회에 오시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던 차에 담임목사로부터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안아주신다고 하면서 강한 스킨십에 너무나 놀라 자신의 전도에 대한 회의와 이 교회를 계속 다닐 것인가 혼란스럽고 전도한 친구들이 교회생활에 무척 행복해하기 때문에 자신이 당한 이야기를 할 수도 없고, 지금까지 자신의 신앙적 소명감에도 깊은 상처와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는 사례를 접하였다.(2010,10월)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할 경우 “너희 문제를 세상 법정에 끌고 가지 말라.”고 한 바울의 말을 빌어 교회문제를 세상의 법정에 맡겼다고 신도들에게 비난과 협박을 받으며 피해자를 사탄과 음란마귀로 규정하는 비난도 받는다. 그렇다고 피해자가 세상법정에 가져가지 않고 교단에 호소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징계가 교회법으로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하더라도 성직자의 도덕과 윤리규정에 따라 처벌 할 수 있음에도 남성중심의 교회는 이일을 기피하고 있다. 오히려 일반 성폭력은 시효 때문에 법정까지 끌고 가기가 힘들지만, 교회에는 목회자의 윤리라는 게 있어 사건을 처리할 의지만 있으면 더 쉽다.

7. 교회 내 성폭력 문제의 과제와 대안

(1) 교회 내 성폭력이 일어났을 때의 공통현상

- 1) 처리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더 많은 피해자들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며 오랜 기간에 걸쳐 성폭력이 자행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된다.

- 2) 피해자의 주장에 대한 가해자의 반응은 다음과 같은 패턴을 보인다. 처음에는 완전히 부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나중에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다(시인하는 것을 피할 도리가 없는 경우) 그 다음에는 합리화를 한다. 어떤 가해자들은 완전한 부인의 단계를 벗어나지 못한다. 그들은 피해자를 탓하거나 원로목사의 정치적 음해로 치부한다.
- 3) 피해자에 대한 교회나 기관의 반응 : 피해자가 속해 있는 교회나 기관은 피해자를 피한다. 그 이유는 피해자에 대한 부당한 분노 때문이기도 하고, "피해자 회피 현상" 때문이기도 하다. 신도들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라서 피해자를 피하게 되며 피해자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 4) "무고"의 경우는 없다. 피해자는 사람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고통을 겪는다. 어떤 피해자는 "피해자가 주장을 할 때 그 말을 진지하게 받아 들여 달라. 재미를 위해 이런 이야기를 꾸며낼 사람은 없다."고 말한다.

(2) 교회 내 성폭력사건 해결의 문제점

- 1) 교단 내에서 성폭력 문제를 전담하여 처리할 수 있는 구조가 없다.
- 2) 교단이 없는 교회의 경우는 처리할 방도가 없다. 소교단의 경우 사고가 나면 탈퇴하고 다른 교단으로 옮기거나 몇몇 교회가 새로운 교단을 만드는 경우도 있다.
- 3)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목사를 고발할 수 있느냐 하는 정서적인 문제에 부딪힌다. 목회자에 의한 성폭력 피해여성들이 피해사실을 드러내어 해결하고자 할 때 "목회자를 포함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든지 "교회문제를 세상 법에 맡겼다"는 등의 협박과 심각한 폭력을 겪게 된다. "주의 종은 하나님이 다루신다"든지 "하나님께 맡겨라!" 혹은 "용서해라" 등등의 말로 피해자를 혼란에 빠뜨린다.
- 4) 교회법 내에 성폭력 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항이 없다. 현재 한국의 어느 교단 법에서도 성폭력과 관련한 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성폭력 가해 목사를 징계, 처벌하거나 피해자를 돌보고 치유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8. 교회 내(목회자 관련) 성폭력 극복을 위한 노력

목회자 개인이 할 일

- 1) 목회자 자신도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대처해야 한다. 홀로 심방을 하거나 밀폐된 공간에서 상담하는 것은 삼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 2) 목회자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배우자와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성적인 욕구가 부부관계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처리될 수 있어야 한다.
- 3) 목회자 자신의 성에 대한 가치관, 또는 여성관에 대해서 성찰해 보아야 한다. 여성을 남성의 소유물로 생각하거나 욕구의 대상으로 여기지는 않는지, 또는 성에 대해 지나치게 금기시하거나 남성들의 성적 남용에 대해 관용적이지는 않은지 살펴본다.
- 4) 성적인 문제와 관련한 어려움이 생겼을 때 믿고 의논하고 처리할 수 있는 자원(예를 들어 선배 목회자나 전문 상담가)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 5) 목회자의 성적 비행은 목회자의 권력남용에서 비롯된 범죄라는 사실을 직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성신도들이 할 일

- 1) 평소 자기주장을 분명히 하는 태도를 갖도록 한다. 불쾌한 성적인 접촉이나 상황에 직면했을 때는 분명한 거부 의사를 표시한다.
- 2) 상담이나 심방 시 목회자와 단 둘이 있게 될 경우를 삼가 한다.
- 3) 목회자를 이상화하거나 절대시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한다.
- 4) 성폭력은 성관계가 아니라 인권을 침해하는 범죄라는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 5) 평소 성폭력에 대한 충분한 예비지식과 대처방법을 익혀둔다.
- 6)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담소의 연락처 등을 알아둔다.

교회/교단이 할 일

- 1) 교회는 성폭력 피해자의 권익을 옹호하는 교회법을 제정하여야 한다.
- 2) 교회법에 성폭력의 범죄규정과 성폭력 가해자를 처벌하거나 상담 치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 3) 각 교단은 성차별과 성폭력예방지침서를 만들고, 교회와 신학교에서 이를 가르쳐야 한다.
- 4) 각 교단은 성윤리를 위한 목회자 자체 정화기구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 5) 각 교단은 성폭력 피해자 치유와 보호를 위한 시설을 설치, 운영하거나 후원해야 한다.
- 6) 교회는 교회 내에서 행해지는 모든 성폭력의 진상을 규명하고 성폭력을 근절하는데 힘을 써야 한다.
- 7) 각 교단은 목회자를 위한 전문상담소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
- 8) 교회는 성에 대한 바른 신학적 입장을 정립하고 교회가 이를 실행하도록 힘써야 한다.

9. 나가는 말

기독교여성상담소에서 교회 내 성폭력 추방을 위한 우리들의 오랜 기간의 과업은 교회내의 성폭력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고 피해여성들을 도우며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법적 투쟁을 도와주는 것이었다. 물론 가해 목회자들의 처벌을 위하여 교단에 협조를 부탁하기도 하고 '교회 내 성폭력 추방을 위한 교회법 토론회'를 열고 교회 내 성폭력의 실태와 이에 대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 하였다.

지난 10여 년 간 구체적으로 이렇다 할 발전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한가지 달라진 점은 피해여성들이 그들이 당한 피해 사실을 더 이상 은폐하지 않고 조금씩 피해 사실들을 드러내고자하는 의지가 강해져 가고 있다는 점이다. 성추행 당한 목원대 신학교 여학생들이 서명운동을 받고 있는 일에서 우리상담소 전화 면접상담이나 온라인 상담에도 올 2010년에만 수십 건에 이르고 있다. 교단 측의 심의 위원 앞에 다섯 명의 피해여성들이 가면서 그들의 심의내용을 녹화하여 비대위 측에 전달하고 그 내용들이 떠돌아다니고 있다. 우리의 21세기는 인터넷, 동영상, 트위터 등의 매체를 통해 우리들의 은폐하고자 하는 사실들이 하루아침에 공론화됨으로서 사회에서 자신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언제 어떻게 노출될지 모르는 사회에 살고 있다. 하물며 성폭력 피해 여성들의 억울하고 "속이 썩어 들어가는" 분함을 누군가는 치유해 주어야 할 것이 아닌가?

어떤 이유로든 성직자에 의한 성폭력으로 고통 받는 여성들이 생겨나서는 안 된다. 성폭력을 행한 성직자가 발붙일 수 없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교회 내 성폭력을 한국교회로부터 추방함으로써 성폭력과 성차별 없는 한국교회 풍토를 만들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다음은 상담소에 접수된 구체적인 사례이다.**

1. 장애인 여성을 결혼을 빙자하여 성관계를 갖고 폭행한 경우
2. 여중생을 야단치는 것처럼 하면서 옷을 벗기고 팬티를 기위로 자르는 등 성추행한 경우
3. 젊은 여신도들의 가슴을 얼마나 컸는지 보자며 만지고 끌어안는 등의 성추행과 성희롱을 한 경우
4. 안수기도를 빙자하여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의 성추행한 경우
5. 죄를 씻기 위해서는 관계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그룹으로 강간한 경우
6. 자신이 영적 아버지라 하고 “딸아, 딸아” 부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 것이라며 강간한 경우
7. 음란마귀를 쫓아 주겠다고 하면서 성기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경우
8. 여신도들을 자신이 사랑하는 라헬(구약성경에 나오는 야곱의 두 번째 아내)이라고 하면서 강간한 경우
9. 교회 재정을 장악하기 위하여 회계업무를 맡고 있는 여사무원을 상습적으로 강간한 경우
10. 심방 중에 강제로 강간한 경우
11. 성령체험(입신)을 빙자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게 한 후 강간한 경우
12. 자신과 성관계한 장면을 비디오 녹화한 후 공개하겠다고 공갈 협박하며 지속적으로 강간한 경우
13. 여신도에게 사랑한다며 강간 미수한 경우
14. 성교육을 한다며 성추행 한 경우
15. 담임목사에게 충성을 맹세케 한다며 목사가 입고 있는 와이셔츠에 소위 입술도장을 찍게 하며 성희롱한 경우
16.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오던 여신도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폭력을 휘두르며 협박하고 스토킹한 경우
17. 홀로 사는 여신도를 상담해 준다면 불러내어 모텔에서 강간하여 임신케 한 경우(부흥목사와 부흥찬양가 사이의 관계)
18. 교회청년부 강도사가 여학생 신도들을 개인면담 한다면서 하나씩 상황을 묻고 성추행 내지는 성폭행한 경우(2007, 9월 일산의 S교회)
19. 사이버 성폭행(초등학교 동창생 명단에서 목회자인 남성에게 먼저 접근하여 유럽과 미국에 있으면서 인터넷 채팅과 화생통화를 통하여 난해한 성추행을 하면서 유린당하고는 목회자를 고소할 것을 결심하고 전화(2007, 10월)
20. 인도 파견 선교사가 먼 친척 조카별 되는 가정을 외국생활에 미숙한 점을 이용해 아이들 학교문제 안착을 위해 필요한 것의 도움을 주다가 믿고 가깝게 여기던 목사님이 사악한 성도착자로 변신하여 만날 때 마다 성적으로 유린하고 강간한 경우 귀국하여 대구 법원에 고소하였으나 증거부족으로 또한 화간으로 기소 취하되어 고법에 재정신청을 하면서 상담을 하고 대구고법판사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여줌 (2010, 11월)

국내 형사법적 관점에서 본 교회 내 성범죄

박 종 운 | 법무법인 소명 변호사, 기독교법률가회 사회위원장

I. 들어가는 말

최근 교회 내 성범죄, 특히 목회자의 여성 성도에 대한 성범죄의 빈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언론 뉴스앤조이에 이미 보도된 사건도 적지 않지만, 그보다는 훨씬 더 많은 사건들이 제보되었고, 성범죄의 특성상 여러 사정으로 인해 보도되지 못한 사건이 많다고 합니다. 일반 언론을 통해서 드러난 개신교 목회자의 성범죄 사건들을 보더라도 기독교의 성윤리는 물론이고 일반 사회의 성윤리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윤석(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성폭력 사건 발생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발생한 성폭력(성추행 포함) 사건은 4만4969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성폭력 사건은 2008년 1만7178건에서 2009년 1만8351건으로 6.8%(1173건) 늘었고, 2010년 6월말 현재 9440건이 발생했으며, 성폭력 발생 건수가 7~8월 여름휴가철에 많은 점을 감안하면 올해도 2009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2008년부터 2010년 6월까지 최근 3년간 전국에서 하루 평균 49.2건, 1시간에 2번꼴로 성폭력사건이 발생한 셈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고소, 고발 등에 의해 경찰청 통계에 잡힌 사건만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추세를 개신교계 또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지, 최근 들어와서는 건전한 것으로 믿어졌던 몇몇 교회에서조차 목회자들이 '성' 문제로 실족하는 것을 보고 들으면서,

이런 상황이라면 도대체 정통 기독교인들이 어떠한 점에서 이단이나 비기독교인들과 성별되는 것인지 혼란스럽기조차 합니다.

지난 12월 15일,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 주관한 '2010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 발표 세미나'가 이곳 청어람에서 열렸는데, 많은 설문 응답자들이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는 이유로 교회와 교인의 행실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는데, 언행일치의 모습을 볼 수 없어서(15.6%), 교인들의 비윤리적 행동 때문에(14.9%)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유추해 볼 때, 목회자의 성범죄는 단순히 해당 목회자와 피해자의 문제, 해당 교회의 문제에서 나아가 한국 사회에서 한국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불명예와 치욕을 안겨주며, 궁극적으로는 기독교 진리의 전파를 가로막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국내 형사법적인 관점에서 성범죄란 무엇이고, 교회 내 성범죄의 특수성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한국 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들먹이기 전에 최소한 실정법적인 관점에서 어떤 점에 유의하여야 하는지 함께 각성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II. 성범죄란 무엇인가

1. 성범죄

가. 의의(意義)

성범죄란, 성(性)에 관계되는 범죄를 말하는데, '성범죄'에 관하여 확립된 정의가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넓은 뜻에서는, 대체로 타인의 자유의사와는 관계없이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정신적·언어적 폭력 등 일체의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대개는 여성 피해자가 많으며, 신고를 해야만 범죄가 성립되는 친고죄(親告罪)에 해당됩니다. 좁은 뜻에서는 형법 제2편 제22장 성폭속에 관한 죄¹⁾,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²⁾에 규정된 범죄만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나. 역사성·상대성 - 축소 경향

성적인 욕망은 식욕과 함께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에 속하지만, 성적인 행동이나 성문화

1) 제241조(간통), 제242조(음행매개), 제243조(음화반포등), 제244조(음화제조등), 제245조(공연음란)

2)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제304조(혼인빙자등에 의한 간음),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제305조의2(상습범), 제306조(고소)

는 시대나 지역에 따라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역사적·상대적이기 때문에 법의 기능을 고려하여 성의 영역에 대한 공권력의 개입·간섭은 최소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윤리와 법률의 구별, 비범죄화 경향, 가벌적 행위만을 법률로 규정).

현대 사회를 특징짓는 많은 현상들 가운데 ‘성의식’만큼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성의식의 빠른 변화와 함께 성과 관련된 범죄의 문제도 다양한 양태를 띄며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의 자유’나 ‘성의 개방’이 시대적 풍조로 되고 있는 현대의 경우 성문화의 역사성과 상대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간통죄(형법 제241조)와 혼인빙자등에 의한 간음죄(형법 제304조) 존폐 문제가 쟁론이 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형법 제304조 위헌소원’에서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경우 입법목적에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첫째, 남성이 위력이나 폭력 등 해악적 방법을 수반하지 않고서 여성을 애정행위의 상대방으로 선택하는 문제는 그 행위의 성질상 국가의 개입이 자제되어야 할 사적인 내밀한 영역인데다 또 그 속성상 과장이 수반되게 마련이어서 우리 형법이 혼전 성관계를 처벌 대상으로 하지 않고 있으므로 혼전 성관계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통상적 유도행위 또한 처벌해야 할 이유가 없다. 다음, 여성이 혼전 성관계를 요구하는 상대방 남자와 성관계를 가질 것인가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한 후 자신의 결정이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상대방 남성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은 여성 스스로가 자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부인하는 행위이다. 또한, 혼인빙자간음죄가 다수의 남성과 성관계를 맺는 여성 일체를 ‘음행의 상습 있는 부녀’로 낙인찍어 보호의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보호대상을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로 한정함으로써 여성에 대한 남성우월적 정조관념에 기초한 가부장적·도덕주의적 성 이데올로기를 강요하는 셈이 된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남녀평등의 사회를 지향하고 실현해야 할 국가의 헌법적 의무(헌법 제36조 제1항)에 반하는 것이자, 여성을 유아시(幼兒視)함으로써 여성을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사실상 국가 스스로가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부인하는 것이 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여성의 존엄과 가치에 역행하는 것이다. 결혼과 성에 관한 국민의 법의식에 많은 변화가 생겨나 여성의 착오에 의한 혼전 성관계를 형사법률이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필요성은 이미 미미해졌고, 성인이 어떤 종류의 성행위와 사랑을 하건, 그것은 원칙적으로 개인의 자유 영역에 속하고, 다만 그것이 외부에 표출되어 명백히 사회에 해악을 끼칠 때에만 법률이 이를 규제하면 충분하며, 사생활에 대한 비범죄화 경향이 현대 형법의 추세이고, 세계적으로도 혼인빙자간음죄를 폐지해 가는 추세이며 일본, 독일, 프랑스 등에도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는 점, 기타 국가 형벌로서의 처단기능의 약화, 형사처벌로 인한 부작용 대두의 점 등을 고려하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혼인빙자간음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수단의 적절성과 피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개인의 내밀한 성생활의 영역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남성의 성적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라는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인 반면, 이로 인하여 추구되는 공익은 오늘날 보호의 실효성이 현격히 저하된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들만의 ‘성행위 동기의 착오의 보호’로서 그것이 침해되는 기본권보다 중대하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상실하였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및 피해최소성을 갖추지 못하였고 법익의 균형성도 이루지 못하였으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남성의 성적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과잉제한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형법 제304조 중 “혼인을 빙자하여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 부분이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남성의 성적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하여 위헌 결정³⁾을 내린 바 있습니다(헌재 2009. 11. 26. 선고 2008헌바58, 2009헌바191 결정).

반면에 형법 제241조 위헌제청 등 사건에서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재판관 4인이 합헌의견⁴⁾, 재판관 4인이 위헌의견⁵⁾, 재판관 1인이 헌법불합치의견⁶⁾으로 위헌의견이 다수이

3) 이에 반대하는 합헌의견도 있었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부녀만 보호대상으로 규정한 이유는 여자가 남자에 대하여 혼인을 빙자하는 경우에는 남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적다고 보았기 때문인데, 남녀는 신체구조가 다르고 성관계에 대한 윤리적·정서적 인식에도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입법자의 판단이 남녀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혼인빙자의 상대가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인 경우에는 음행의 상습있는 부녀의 경우보다 혼인빙자로 인하여 기망에 빠져 정교에 응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것이므로, 음행의 상습있는 부녀를 불합리하게 차별한다고 보기 어렵고, 가부장적 정조관념이나 부녀의 혼전 순결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혼인을 빙자하여 부녀를 간음하는 행위는 자신만의 영역을 벗어나 다른 인격체의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자기결정권의 내재적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혼인을 빙자하여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간음한 남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남성이 혼인할 의사가 없으면서 혼인하겠다고 속이는 행위까지 헌법 제17조에 의하여 보호되는 사생활에 속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남자가 혼인빙자행위라는 부정한 수단을 사용한 이상, 상대방 부녀가 거짓을 알아차리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하여 혼인빙자 간음행위의 가벌성을 부정할 수 없다. 남자의 혼인빙자로 인하여 여자가 속아서 정교에 응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고소하는 경우에는 사생활의 영역과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를 벗어나 사회질서 침해의 문제로 표출된 것이므로, 이러한 단계에서는 사회질서 유지의 필요성이 당사자들의 사생활을 보호할 필요성보다 훨씬 크다. 또한 개인의 사생활이 타인의 법익을 침해할 경우에는 순전한 개인의 영역을 벗어나는 것이고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한도에서 헌법 제17조의 보호범위를 벗어난다고 볼이 상당하므로, 남자가 혼인을 빙자하여 부녀를 간음한 행위를 처벌한다고 하여 법익균형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 혼인빙자행위와 정교 동의 및 정교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가벌성이 뚜렷한 경우만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도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남녀 간의 은밀한 사통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조항이라면 모르되, 피해 부녀가 상대방의 위계, 기망에 의한 피해를 입고 상대방에 대한 조사 및 처벌을 적극적으로 요청(이 사건 죄는 친고죄이다)하는 경우를 남녀 간의 내밀한 사사(私事)에 불과하다고 하여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없다. 우리 사회의 여성들 모두가 더 이상 헌법이나 법률의 보호와 배려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되었다고는 볼 수 없고, 아직도 헌법이나 법률의 보호와 배려를 필요로 하는 소수의 여성들이 존재한다고 보는 이상, 이 사건 법률조항을 지금 시점에서 서둘러 폐기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오직 남성이 여성을 쾌락의 대상으로 여겨 혼인사도 없이 혼인빙자의 위계로써 기망하여 성관계를 편취하는 반사회적인 행위를 제재하는 것일 뿐 인바, 이러한 점들을 무시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남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성관계에 관하여 위계, 기망, 편취의 자유를 인정하는 셈이 될 것이며, 이것이 부당함은 명백하다.”

4) 그 요지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혼인관계를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간통 및 상간행위를 제재하는 것으로 정당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 다만 ‘형벌의 제재 규정이 지나친 것인지 문제되나, 이는 기본적으로 입법형성

긴 하나, 법률의 위헌선언에 필요한 정족수 6인에 미달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헌재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21, 2008헌가7·26, 2008헌바21·47 결정)고 하여 결과적으로 합헌이 유지되었습니다.

다. 새로운 흐름 - 확대 경향

성범죄 특히, 성폭력을 성기 중심적이고 물리적인 강제행위에 초점을 맞추어온 종전의 개념에 반대하면서, 성을 매개로 여성에게 가해지는 일련의 강제 및 통제행위로서의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을 포괄하는 개념의 정립을 요구하는 새로운 흐름이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강간, 어린이 성추행을 포함한 각종 성폭행, 성적학대와 성적희롱, 성기 노출, 음란전화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강제행위는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협박, 위계나 속임수, 위력행사에 의해 강제성이 부과되는 경우 또는 강제행위에 대해 직접적인 거부를 하지 못할 만큼 피해자를 무력하게 만든 상태에서 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모두 포괄하게 됩니다.

예컨대, 개정전 형법은 강간을 ‘정조에 관한 죄’로 다루어 정조의 법적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는데, 이는 강간을 ‘정조 상실’의 문제로 간주해 온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강간은 정조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 폭력행사의 문제로 취급되어야 합니다. 최근 형사정책학에서는 범죄피해론자와 관련하여 성범죄 피해자를 범죄의 피해자인 동시에 형사사법 제도의 피해자 그리고 사회의 피해자로서 3중의 피해를 받으므로 보호책의 강구가 절실 하다고 주장하는 견해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
- 의 자유에 속한다. 간통이 사회질서를 해치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우리의 법의식 및 간통 및 상간행위에 대한 사전예방의 강한 요청에 비추어 간통 및 상간행위를 형사처벌하기로 한 입법자의 판단이 자의적인 것이라 할 수 없고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사익은 특정한 관계에서의 성행위 제한으로 경미함에 비하여 달성되는 공익은 높은 중요성이 있어 법익균형성 역시 인정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나치게 과중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형법이 간통죄를 범죄로 처벌하는 것 자체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구체적인 행위 태양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간통이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일률적으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입법자로서는 이를 입법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5) 그 요지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하여 개인의 성적(性的)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위헌이다. 오늘날 성(性)에 대한 국민 일반의 법감정이 변하고 있고,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위 모두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며, 간통 및 상간행위의 형사처벌이 일부일처제와 가정보호·부부간의 성적 성실의 무 보호·여성의 보호에 실질적인 기능을 하지도 못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의 수단의 적절성 및 피해의 최소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개인의 내밀한 성생활의 영역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아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법익균형성을 상실한 것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간통 및 상간행위를 형사처벌하도록 한 자체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나,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을 규정한 것은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 또는 제한하여 책임과 형벌간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
 - 6) 그 요지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단순히 도덕적 비난에 그쳐야 할 행위 또는 비난가능성이 없거나 근소한 행위 등에까지 형벌을 부과하여 법치국가적 한계를 넘어 국가형벌권을 행사한 것으로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최근, 성매매, 아동 관련 성범죄, 성폭력범죄에 대한 특별법 등이 제·개정되는 것은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2. 성폭력

가. 의의(意義)

성폭력(性暴力)이란, 강간이나 강제추행 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몰래 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말합니다. 성폭력의 유형은 행위의 내용, 가해자와의 관계, 성폭력이 일어나는 공간에 따라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가 있고, 협의로는 강간, 강간미수를 말하기도 합니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

2010. 04. 15. 제정·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는 “① 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1. 형법 제2편 제22장 성폭속에 관한 죄 중 제242조(음행매개), 제243조(음화반포등), 제244조(음화제조등) 및 제245조(공연음란)의 죄 2. 형법 제2편 제31장 약취와 유인의 죄 중 추행 또는 간음을 목적으로 하거나 추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영리등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등), 제292조(약취, 유인, 매매된 자의 수수 또는 은닉. 다만, 제288조의 약취, 유인이나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죄로 한정한다), 제293조(상습범. 다만, 제288조의 약취, 유인이나 매매된 사람 또는 제289조의 이송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및 제294조(미수범. 다만, 제288조의 미수범 및 제292조의 미수범 중 제288조의 약취, 유인이나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미수범과 제293조의 상습범의 미수범 중 제288조의 약취, 유인이나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상습범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3. 형법 제2편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4.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죄 5. 이 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부터 제14조(미수범)까지의 죄 ② 제1항 각 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는 성폭력범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제4조(특수강간 등),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간음 등),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제8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9조(강간 등 살인·치사),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제12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제13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에 처벌 및 절차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성폭력의 유형

성폭력은 성폭력 행위, 가해자와의 관계, 성폭력이 일어나는 공간에 따라 다양하고도 복합적인 형태로 일어나고 있는데, 아래에서는 새로운 흐름의 경향에 따라 성폭력의 유형을 분류해 봅니다.

데이트 성폭력 : 데이트 중에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행동을 하거나 강요하는 것을 말합니다. 데이트 성폭력은 상대방의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서로 좋아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성폭력이라고 인식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에서의 성폭력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상처는 더욱 큼니다. 상대방을 존중한다면 항상 상대방의 욕구와 의사에 귀를 기울이고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친족성폭력 : 가족, 친척, 인척관계 내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을 말합니다. 친족 성폭력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오랫동안 같은 공간에서 머물러야 하는 특성상 어린 시절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성폭력 피해를 경험하게 될 수 있으므로 가족 중에 가해자가 있다면 빨리 피해자와 분리시켜야 합니다.

사이버 성폭력 : 사이버 공간에서의 채팅이나 이메일 등을 통해 원하지 않는 이야기를 하거나 장면을 보게 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이나 위협을 느끼게 하는 행위입니다. 사이버 성폭력은 현실 세계의 성폭력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인 동시에 자유롭고 편안한 환경에서 통신활동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범죄입니다.

공공장소에서의 성폭력 : 지하철이나 극장, 버스 등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많은 장소에서 여성들에게 몸을 부딪치거나 다리를 벌리고 앉아서 옆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성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 : 싫다고 의사표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것을 말합니다. 만나줄 것을 요구하거나, 두 사람 사이의 일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하거나,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것 등 정신적, 신체적으로 괴롭히는 것이 해당됩니다. 사랑의 표현이나 구애로 보는 경우가 많지만, 스토킹은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성폭력 범죄입니다

7) 이에 대해서는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의 성폭력 유형 분류를 빌려 왔습니다.

2차 가해 : 1차 가해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행한 직접적인 가해라고 하면 ‘2차 가해’는 성폭력사건을 둘러싼 사회적 시선이나 피해자를 대하는 태도로 인해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피해자의 행동이나 옷차림을 문제 삼아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 성폭력 사건을 신고·고소했을 때 조사과정에서 성경험 등을 질문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또 다른 고통을 주는 것 등을 2차 가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내 성폭력 : 학내 성폭력은 학교라는 공간에서 교사나 교수, 선배 등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을 말합니다, 학내 성폭력은 평소 친분이 있고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들 간에 발생하는 성폭력이기 때문에 성폭력으로 인식하기도 쉽지 않고 공개적으로 문제제기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학내 성폭력은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 뿐만 아니라 안전하게 학습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심각한 범죄로 공동체 내의 적극적인 해결과정이 필요합니다.

직장내 성희롱 : 직장내 성희롱이란 “직장상사, 동료, 계열사 직원 등이 채용과정이나 근무기간 중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는 성적인 언동”으로 피해자에게 성적인 불쾌감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직장내 성희롱이나 성폭력은 분위기를 위한 농담 정도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피해자들에게는 안전한 일터를 위협받게 됨으로써 경제활동과 관련된 생존권에도 위협을 주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3. 기타

가. 성추행(醜行)

‘성추행’은 일방적인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하여 물리적으로 신체 접촉을 가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말하는데, 우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추행’은 강간까지 가기 전 단계의 성폭력 행위를 통칭하는 경우로도 사용됩니다. 유사성행위⁸⁾도 성추행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관련 판례를 보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자신의 성기를 만져줄 것을 강요”하는 행위(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89712 판결), “강제로 껴안고

8) 개념이 확립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성기 삽입에까지는 이르지 않았으나) 하의를 벗기고 성기를 애무하거나 애무케 하는 성행위” 정도로 보면 될 것입니다.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려고 키스를 하려고 할 때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완력으로 강제로 얼굴과 목 등에 키스”를 하는 행위(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2137 판결), “(유치원 어린이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다10585,10592 판결), “11세 아동 갑(여)에게 ‘너 참 예쁘다. 아저씨가 용돈 줄게.’라고 말하며 1,000원을 준 후 얼굴을 쓰다듬고 팔로 어깨를 감싸 안으며 뺨과 이마에 뽀뽀를 ... 갑에게 ‘언니 눈치 보지 마라. 내가 니 맘을 다 안다.’라고 말하며 어깨를 감싸 안고, 팔을 어루만지고 어깨를 쓰다듬”는 행위(수원지법 2010. 8. 25. 선고 2010고합291 판결) 등이 있습니다.

나. 성희롱(戲弄)

‘성희롱’은 주로 직장 내 성범죄와 관련하여 가장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유형인데, 이성에 대해 상대방의 의사에 관계없이 성적으로 수치심을 주는 말이나 행동, 또는 그 말이나 행동을 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을 대체하여 제정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2호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판례로는, “... 여직원 소외 1이 점심시간에 혼자 남아 팩스를 이용하여 서류를 전송하고 있자 갑자기 뒤에서 소외 1을 껴안아 그를 당황스럽게 하였고, ... 술에 취하여 밤 11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경까지 사이에 여러 차례 소외 1에게 전화를 걸어 ‘오빠야, 내가 너 사랑하는지 알지. 너는 나 안 보고 싶냐는 등의 말을 하였던 사실... 여직원 소외 2에게 목과 어깨를 주물러 달라고 요구하고, ... 저녁에 여직원 소외 3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잡이 비어 있는데 놀러 오라고 요구하였으며, ... 직원 회식을 마치고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기는 중 계단에서 갑자기 여직원 소외 4를 껴안고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지’라고 말하면서 볼에 입을 맞추었고, ... 여직원 소외 5가 업무를 보고할 때 성과가 좋다고 하면서 ‘열심히 했어, 뽀뽀’하면서 얼굴을 들이대는 등의 행동을 하였고, 소외 5가 휴가를 가겠다고 보고하자 잘 다녀오라고 하면서 위 여직원을 껴안았던 사실, ... 컴퓨터 화면을 보고 있던 소외 2를 갑자기 껴안았고, ... 저녁에 ... 축하 회식을 하게 되었는데, 수차례 선정 축하에 따른 건배 등 음주를 하는 과정에서 여직원들을 자신의 좌석 옆자리로 불러 그 동안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술을 먹도록 권유하였고, 여직원 소외 6의 옆자리에 앉아 귓속말을 하면서 그의 귀에 입을 맞추거나 자리를 옮기는 여직원 소외 3의 엉덩이를 치는 등의 행동을 하였으며, 여직원 소외 7에 대해서는 원고가 한 입 먼저 먹은 상추쌈을 먹도록 하였고, ... 회식을 마치고

식당 앞으로 직원들과 함께 나가는 과정에서 모여 있던 직원들 중 여직원 소외 4, 소외 7, 소외 8 등 수명의 여직원들을 차례로 껴안아 올리거나 도는 등의 행동을 하였는데, 특히 소외 8의 경우 그의 가슴 부위를 안고 들어 올려 본인뿐 아니라 다른 여직원들에게도 불쾌감을 느끼게 한 사실"을 "강제추행 또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인정될 정도의 성적 언동도 포함된 성희롱 행위"로 인정하면서, "구 남녀고용평등법(2005. 5. 31. 법률 제7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한 '직장 내 성희롱'이라 함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하고, 그 전제조건인 '성적인 언동 등'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위 규정상의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참조)이라고 본 사례(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등이 있습니다.

다. 성추문(醜聞) : 성에 관한 추잡하고 좋지 못한 소문을 말하는데, 영어의 스캔들과 유사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Ⅲ 성범죄와 처벌

1. 성범죄와 처벌

성범죄는 고대로부터 처벌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예전에는 (개인의 성적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개인적 범죄로서의 차원이 아니라) 음란성을 추방하여 성적 순결성을 보호하려는 사회적·국가적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차원으로 이해되었는데, 이러한 시각에서 로마법에서는 강간·근친상간·매매음(賣買淫)·간통 등을 범죄로 다루었고, 중세의 교회법

과 계몽기 이후의 오스트리아·독일 등의 근대 형법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범죄가 강간·추행의 죄와 성폭속에 관한 죄로 분리된 것은 성범죄의 자유화·합리화의 요구가 인식되기 시작한 비교적 최근의 일입니다.

현행 형법에는 제22장 성폭속에 관한 죄,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가 있고, 특별법으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0. 4. 15. 공포 및 시행),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공포, 2011. 1. 1. 시행),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2010. 7. 23. 공포, 2011. 7. 24. 시행),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2010. 4. 15. 개정, 2011. 1. 1. 시행),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개정, 2011. 1. 1. 시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7. 23. 개정, 2010. 8. 24. 시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2010. 4. 15. 개정 및 시행)의 일부 규정, 아동복지법(2010. 6. 4. 개정 및 2010. 7. 5. 시행)의 일부 규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2010. 07. 23. 개정 및 시행)의 일부 규정 등이 있는바, 아래에서는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만 기재해 봅니다.

성범죄 관련 규정들은 일반 형법의 경우 대부분이 친고죄⁹⁾이지만, 특별 형법의 경우 대부분을 비친고죄(非親告罪)로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공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형법

형법은 ‘강간과 추행의 죄’(제2편 제32장)와 ‘성폭속에 관한 죄’(제2편 제22장)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강간과 추행의 죄’는 개인적 법익, 즉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성폭속에 관한 죄’는 사회적 법익, 즉 사회 일반의 건전한 성도덕 내지 성풍속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가. 제22장 성폭속에 관한 죄

제241조(간통)는 “① 배우자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② 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중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제242조(음행매개)는 “영리의 목적으로 미성년 또는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매개하여 간음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3조(음화반포등)는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

9)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

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4조(음화제조등)는 “제243조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5조(공연음란)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간통’이나 ‘간음’은 원칙적으로 상대방과 성행위(성교)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제297조(강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8조(강제추행)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게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는 “사람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전2조의 예에 의한다.”, 제300조(미수범)는 “전 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는 “제297조 내지 제300조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는 “제297조 내지 제300조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는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는 “①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부녀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부녀를 감호하는 자가 그 부녀를 간음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04조(혼인빙자등에 의한 간음)¹⁰⁾는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는 “13세 미만의 부녀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제305조의2(상습범)는 “상습으로 제297조부터 제300조까지, 제302조, 제303조 또는 제305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306조(고소)는 “제297조 내지 제300조와 제302조 내지 제305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10) 위 조문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결정이 내려졌다는 점에 대해서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제306조가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위 제32장에 속한 대부분의 범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고, 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는 “①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② 형법 제291조의 죄로 약취, 유인된 자가 혼인을 한 경우의 고소는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전항의 기간이 진행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해야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 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제1조), 어떤 범죄가 성폭력범죄인지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고(제2조), 제2장(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는 “①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부터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4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부터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4조(특수강간 등)는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는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간음 등)는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하거나 사람에게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형법 제297조(강간) 또는 제298조(강제추행)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는 “① 13세 미만의 여자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

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여자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제8조(강간 등 상해·치상)는 “① 제3조 제1항, 제4조, 제7조 또는 제14조(제3조 제1항, 제4조 또는 제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5조, 제6조 또는 제14조(제5조 또는 제6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9조(강간 등 살인·치사)는 “①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제14조(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형법 제297조(강간)부터 제300조(미수범)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또는 제14조(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7조 또는 제14조(제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는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2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는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미수범)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5조(고소)는 “제10조 제1항, 제11조 및 제12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16조(보호관찰 등)는 “①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1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이 소년인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관찰을 명하여야 한다. ②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일정 기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감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되,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이 소년인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감을 명하여야 한다. ③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의 집행 중에 가석방된 사람은 가석방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는다. 다만, 가석방을 허가한 행정관청이 보호관찰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7조(고소 제한에 대한 예외)는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 제18조(고소기간)는 “① 성폭력범죄 중 친고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1년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다만,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산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 제2항을 준용한다.”, 제19조(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제3조부터 제11조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 제1항·제2항 및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0조(공소시효 기산에 관한 특례)는 “①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② 제2조 제3호 및 제4호의 죄와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는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제21조(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준용)는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절차에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7조(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제8조(출판물 게재 등으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제9조(소송 진행의 협의), 제12조(간이공판절차의 결정) 및 제13조(판결선고)를 준용한다.”, 제22조(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는 “①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은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 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사람은 성폭력범죄의 소추에 필요한 범죄구성사실을 제외한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출판물에 실거나 방송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는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는 “① 검찰총장은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 검사를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 경찰청장은 각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제1항의 검사 및 제2항의 사법경찰관에게 성폭력범죄의 수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피해자보호를 위한 수사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5조(성폭력범죄에 대한 전담재판부)는 “지방법원장 또는 고등법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성폭력범죄 전담재판부를 지정하여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재판하게 하여야 한다.”, 제26조(영상물의 촬영·보존 등)는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를 당한 피해자의 나이, 심리 상태 또는 후유장애의 유무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조사할 때 피해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는 조사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조사 횟수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피해자가 16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촬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피해자나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 ⑤ 수사기관은 제3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신청이 있으면 영상물 촬영 과정에서 작성한 조서의 사본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⑥ 누구든지 제3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을 수사 및 재판의 용도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심리의 비공개)는 “① 성폭력범죄에 대한 심리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결정으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증인으로 소환받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와 그 가족은 사생활보호 등의 사유로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재판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그 허가 및 공개 여부, 법정 외의 장소에서의 신문 등 증인의

신문 방식 및 장소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법원조직법 제57조(재판의 공개)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28조(전문가의 의견 조회)는 “① 법원은 정신과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그 밖의 관련 전문가로부터 행위자 또는 피해자의 정신·심리 상태에 대한 진단 소견 및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성폭력범죄를 조사·심리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의견 조회의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관련 전문가 후보자 중에서 제1항에 따른 전문가를 지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수사기관이 성폭력범죄를 수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에게 피해자의 정신·심리 상태에 대한 진단 소견 및 진술 내용에 관한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준용할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검찰총장 또는 경찰청장’으로 본다.”, 제29조(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는 “법원은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10조 및 제14조(제9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범죄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 검사,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재판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수사기관이 전단의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30조(비디오 등 증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는 “① 법원은 제2조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범죄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증계장치에 의한 증계를 통하여 신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인신문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31조(증거보전의 특례)는 “①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은 피해자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해당 성폭력범죄를 수사하는 검사에게 형사소송법 제184조(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 제1항에 따른 증거보전의 청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가 제26조 제3항의 요건에 해당하면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검사는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증거보전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제3장 ‘신상정보 등록 및 등록정보의 공개 등’은 제3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제33조(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제34조(등록대상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 등), 제35조(등록정보의 관리), 제36조(등록정보의 활용 등), 제37조(등록정보의 공개), 제38조(공개명령의 집행), 제39조(비밀준수), 제40조(공개정보의 악용금지), 제41조(등록정보의 고지), 제42조(고지명령의 집행)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제4장 ‘벌칙’ 제43조(벌칙)는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9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등록정보를 누설한 자 2. 제4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 정당한 권한 없이 등록정보를 변경하거나 말소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 2 제22조 제3항을 위반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3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정보 또는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출한 자 2. 제40조제3항을 위반한 자 ④ 제2항 제2호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44조(양벌규정)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3조 또는 제4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IV. 교회 내 성범죄의 특수성

교회 내 성범죄의 특수성은 일반 성범죄의 특수성과 유사하면서도 다른 점이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필자 나름대로 일반 성범죄와 교회 내 성범죄의 특수성을 간추려 보았습니다.

1. 은밀성 - 입증의 곤란 - 고소의 어려움

최근의 성범죄는 공공장소에서도 일어납니다만, 대부분의 성범죄는 은밀하게 발생합니다. 따라서 가해자와 피해자, 이렇게 두 사람만 알고 다른 사람들은 모르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성범죄 피해자는 사회적 편견 및 제2차 피해의 대상이 될 것을 우려하여 성범죄 피해자라는 사실 자체를 밝히기 꺼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편, 목격자가 없고 가해자와 피해자 둘 만 아는 사실이다 보니, 피해자가 나중에 성폭력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려고 해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와 같이 입증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가해자가 그런 일이 없었다고 딱 잡아떼고 부인하게 되면, 치밀하게 증거를 확보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피해자가 나중에 성범죄임을 알고 가해자를 고소하려고 해도 고소가 어렵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2. 친고죄 - 고소기간의 제한

이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부분의 성범죄는 피해자측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고,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고소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형사소송법 제230조)인데, 피해자 홀로 고민하다가 증거도 확보하지 못하고 시간

을 소비하게 되면, 6월을 넘기기 쉽습니다.

3. 수직 관계

목회자의 성도에 대한 성범죄는 마치, 근친자에 의한 성범죄, 직장 내 상사에 의한 성범죄와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목회자는 마치 성도가 자신의 영적인 자녀인 것처럼 접근하고, 영적인 상사처럼 수직적인 위계질서를 가지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목회자에 의한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을 들어보면, 대부분 “사랑하는 자매”라 부르면서 성적인 접촉을 시도하고, 평상시라면, 다른 사람이었다면 당연히 거부하였을 성적인 행위라도 목회자가 요구하면 모든 이성이 마비된 것처럼 꼼짝 못하고 순종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위가 끝난 뒤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지 못하도록 영적인 권위를 앞세워 억박지르거나 인간적인 약함을 드러내거나 목회를 핑계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신앙적 위계(僞計)

목회자가 여성도에 대해 성범죄를 행할 때에는 성서의 오용과 자의적인 해석이 뒤따르게 됩니다. 아담을 돕는 배필인 하와, 목자의 기쁨이 되어주는 양, 하나님께 드리듯이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라는 등 이단/사이비 교주의 입에서나 나올 만한 말들로 여성도들을 혼란에 빠지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번 혼란에 빠진 피해 여성은 그것이 성폭력이라는 사실을 아예 깨닫지 못하거나, 깨닫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자신이 목회자를 섬기는 방법이요, 주의 종을 기쁘게 하는 것, 심지어는 주의 종의 은혜를 입었다는 착각에까지 빠지게 됩니다.

5. 중독성 - 반복, 상습, 재범의 가능성

목회자가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대부분의 성범죄자가 그러하듯이 단 1건, 혹은 1회에 그치는 경우가 드물다고 할 것입니다. 성범죄자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신체·성기능 측면에서는 성충동이 강하고 과잉성욕을 가졌으며, 성의식·정신적 측면에서는 성의 윤리적 가치를 부정하고 사회의 의미를 무시하며 여성을 성욕의 방출 대상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목회자의 경우에도 평소 설교 기타 언행을 통해 여성 비하적인 발언을 하는 경우가 많고, 여러 여성도들에게 성희롱적인 언동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목회자의 성범죄에 대해서는 반복성, 중독성,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6. 제2차 피해의 심각성

성폭력은 피해를 당한 여성 개인은 물론 사회 전체에도 심각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성폭력을 당한 여성 개인은 공포·우울·불안·모욕감·복수심·남성혐오감·성관계의 어려움·불면·소화

장애·두통 등을 가져오고, 인간관계의 손상, 직장상실, 신앙상실 등의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사회적으로는 직장 내에서 행해지는 추행의 경우 여성들의 근로의욕을 떨어뜨리고, 밤늦게 일해야 하는 직장에 대해서는 선택을 꺼리게 합니다. 교회 내 성폭력의 경우에는 교회 공동체를 떠나게 되고 심지어는 신앙을 버리게 되기도 합니다.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성폭력에 대한 오해와 그릇된 통념들입니다. “강간은 정숙하지 못한 여성들의 옷차림이나 행동 때문에 일어난다.”, “남성은 순간적인 성충동을 억제할 수 없어 강간한다.”는 등의 속설은 강간이 어린이와 노인들까지 대상으로 하고, 모르는 사람보다 아는 사람에 의해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잘못된 것임이 명백해졌습니다만, 아직까지도 통념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내 목회자에 의한 성폭력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성폭력의 경우보다 피해자의 2차 피해 정도가 훨씬 더 크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가해 목회자 본인이나 교회 내 다른 구성원들의 피해자에 대한 태도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목회자를 유혹하였다, 목사님이 그 정도의 애정 표현을 한 것 가지고 감히 성범죄자로 몰아세울 수가 있느냐, 너만 참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교회를 파괴하려는 사탄의 자식이다, 심지어는 원래부터 이단에 속한 자였는데 우리 교회를 파괴하려고 침투하였다고 까지 비난하기 때문입니다.

V. 결론

2002년에 교회개혁실천연대가 출범하면서부터 집행위원으로 섬기다 보니, 여러 목회자와 교회 내·외부의 좋은 일, 나쁜 일들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 중 가장 최근에 부딪친 문제는 바로 목회자의 성범죄 문제입니다. “최근 들어 건전한 교회로 믿어졌던 몇몇 교회에서조차 목회자들이 ‘돈’과 ‘성’ 문제 등으로 실족하는 것을 보고 들으면서, <실족한 목사님께 드리는 권면의 글> 형식을 빌려” 복음과상황 9월호와 뉴스앤조이에 글을 실은 적이 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아 뉴스앤조이에 <교회 X 목사 여성도 성추행> 기사가 보도되는 바람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사실, 그 이전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위 글을 쓰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A교회 B 목사>의 여성도 성추행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7월부터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상담하고 협의하고 다투기도 하면서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현재까지도 진행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목회자라 하더라도 영적

인 긴장의 끈을 놓치게 되면, 자신도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혹은 알면서도, 성적으로 타락한 세속정신에 몸과 마음이 몰들어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훌륭한 분이라고 소문이 나 있었기 때문에 죄를 범한 것은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분만큼은 한국의 고든 맥도날드가 될 수 있으리라 선불리 믿어보기도 하였습니다.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보고 그 분 또한 우리와 같이 평범한 죄인임을 깨닫기도 하였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가장 심각하게 고민하게 된 것은, '회심과 회개', '치유와 회복'입니다.

범죄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최악의 수렁에 빠진 우리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주관적이면서도 객관적인 '회심', '회개'를 하게 되는 것인가? 치유와 회복의 어떻게 가능한가? <실족한 목사님께 드리는 권면의 글>은 이 고민의 시작이자 그 당시까지의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위 문제를 지금 당장 해결할 수는 없지만, 오늘 발제와 토론을 통하여 교회 내 성범죄 특히 목회자 그룹에 의한 성범죄뿐만 아니라 평신도에 의한 성범죄도 근절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 한순간 미혹되어 성범죄를 저질렀을지라도 신앙적으로 자복하고 회개하는 길, 치유와 회복의 길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논의되기를 기대합니다.

목회자 성윤리 교육의 방향성

김 승 호 | 영남신학대학교 기독교윤리학 교수

서론

최근 국내 목회자들의 성적 탈선에 관한 사건들이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그동안 목회자의 성적 탈선이 교회 내에서 발생한 경우에 은폐가 안 된다는 이유로 교회 내에서 드러내지 않고 숨기거나 소수의 장로 그룹에 의해 비밀리에 다루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¹⁾ 성적 이슈 자체를 금기시하는 전통적인 한국교회 문화, 목회자의 성적 탈선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해당 목회자뿐 아니라 해당 교회가 입을 이미지 손상, 그리고 이런 이미지 손상이 곧 교인 수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로 인해, 이 이슈는 공개적으로 다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다.

목회자 성적 탈선의 문제는 최근에 나타나는 이상 현상이라기보다는 과거에도 있었던 현상이지만 단지 베일에 가려져 왔을 뿐이라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어쨌든, 최근으로 올수록 목회자의 성적 탈선 문제는 심각한 양상으로 드러나고 있다. 특히, 한국교회 내외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목회자들마저도 성적 탈선에 빠지는 경우들이 발생함으로 말미암아 교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까지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이 이슈는 더 이상 교회 내에서 비밀리에 다루어질 사항이 아니라 공론화되어야 하며 분명한 원인 규명과 함께 예방책에 대한 진지한 토론과 대책이 개신교계 전체 차원에서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포럼은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목회자의 성 윤리관 확립의 문제는 목회자가 되기 위해 준비하는 신학대학원 과정을 이

1) 때로 해당 목회자가 당회와 교회 앞에 사죄하고 교회가 다시금 목회자에게 목회할 기회를 주거나, 목회자가 교회를 떠나서 해외 선교사로 파송 받거나, 타 지역의 교회로 사역지를 옮기거나, 혹은 사역하던 교회를 떠나 새로 교회를 개척하는 경우도 볼 수 있었다.

수하는 중에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 신학대학원 과정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 본고는 목회자의 성적 탈선의 원인을 살펴보고, 국내 신학교들 및 북미 신학교들의 성윤리 교육의 현황에 대해 알아보며, 향후 신학생/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바람직한 성윤리 교육의 방향성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목회자 성적 탈선의 원인

목회자 성적 탈선의 원인으로는 다양한 견해들이 있다.²⁾ 본고에서는 보다 포괄적인 차원에서 그 원인들을 생각해 보았다. 먼저, 일반적인 원인으로 성 개방의 풍조를 들 수 있다. 과거에 비해 성에 대한 개방적인 문화가 더욱 더 깊이 우리 사회에 스며들게 되었다. 이런 경향이 목회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목회자들까지도 과거보다 더 쉽게 성적인 자극을 불러 일으키는 환경에 노출되었다. 즉, 인터넷 포르노그래피에의 접근 용이성, 성 관련 산업의 확산 등 목회자들이 과거보다 더 많은 성적 유혹에 노출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

둘째, 신학교에서 성윤리와 관련된 교육을 거의 받지 못한 이유를 들 수 있다. 예비 목회자로서 신학대학원 과정을 이수하는 기간 동안 성윤리와 관련된 교육을 받을 기회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그런 이유로, 신학생들 중에는 성에 대한 문제를 단지 개인적이고 사적인 차원의 문제로만 인식하고, 올바른 성 윤리관 확립이 어려운 실정 가운데 있다. 이로 인해 신학생들은 성의 메카니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고,³⁾ 성윤리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함으로 자신에게 다가오는 성적인 유혹을 제어할 능력과 방법을 알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⁴⁾ 또한 과거에 성적으로 학대를 받은 경험이 있거나, 성에 대해 왜곡된 편견을 갖고 있는 경우, 혹은 성 중독에 빠져 있는 자가 신학대학원에 입학할 경우,⁵⁾ 신학대학원 이수중에 이 문제에 대해 제대로 직면할 기회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결국 이런 자가 졸업 후 목회 현장

2) 조용훈, “목회자의 성적 탈선과 목회윤리적 과제”, 『신학사상』 124집 (2004년 봄), 193-217; 김승호, “왜곡된 영성으로서의 목회자의 성적 탈선”, 『신학과 목회』 제33집, 영남신학대학교, 2010년 5월호 참조

3) 목회자가 말씀연구와 기도생활을 충실히 한다면 어떤 성적 유혹에도 빠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 물론 목회자가 영성적 차원에서 깨어 있으면 성적 유혹을 통제 제어할 능력이 커진다는 말에는 알리가 있다. 그러나 소위 영적인 깨어있음이 자동적으로 목회자의 성적 탈선을 방지해 주는 안전장치가 된다는 주장은 다소 무리한 주장으로 보인다. 인간은 영적 존재이자 동시에 성적 존재라 할 수 있다. 영적으로 말씀과 기도에 충만한 상태로 보이는 상황 중에서도 목회자가 성적 탈선에 빠지는 경우들을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자신이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쉽게 성적 탈선에 빠질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항상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한다. 이러한 필자의 주장은 영성과 성이 상호관련 되어 있다는 여러 학자들의 주장에 기인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리차드 포스터, 김영호 역 『돈 섹스 권력』 (두란노: 1996, 22쇄), 105; Karen Lebacoz & Ronald G. Barton, *Sex in the Parish* (Louisville: Westminster/John Knox Press, 1991), 32; J. Harold Ellens, *Sex in the Bible: A New Consideration* (CT: Praeger, 2006), 6. 참조

4) 실제로 목회자 자신의 적극적인 의도로 성적 탈선에 빠지는 경우도 있지만, 목회자의 의도여부와 무관하게 유혹하는 자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는 경우도 볼 수 있다.

5) 신학대학원 지원자가 성 중독이나 성적 왜곡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현 신학대학원 입학 과정에서의 면접을 통해서 제대로 알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에 나가서 적당한 환경에 노출되면 쉽게 성적 탈선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목회자 성적 탈선에 대한 목회현장에서의 원인으로는 목회자와 교인 사이의 힘의 차이,⁶⁾ 과거 심방 위주의 목회에서 최근 상담 위주의 목회체로의 전환⁷⁾, 과거보다 더 개방된 신체 접촉의 문화가 교회 내에 들어 온 점, 질병으로서의 목회자의 성 중독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즉, 목회자가 성의 메카니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목회사역을 감당하면서 다가올 수 있는 성적 탈선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거나, 성윤리에 대해 제대로 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쉽게 성적 탈선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국내 신학교들의 성윤리 교육 현황

목회자 성적 탈선의 문제는 목회자로서 훈련받는 과정인 신학대학원 과정에서의 성윤리 교육의 부실에서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있다. 국내 신학교들의 성윤리 교육 현황을 몇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국내 신학교들의 신학대학원 과정에는 성윤리 관련 과목이 거의 개설되어 있지 않다. 실제로 신학대학원 과정에서는 이론신학과 실천신학 제 분야에 대한 과목들에 초점을 맞추어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신학대학원 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신학생들이 성윤리에 관해 스스로를 돌아보고 이 이슈에 직면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므로 성윤리에 관해 터놓고 이야기할 기회도 없고 제대로 교육 받을 수 있는 기회도 갖지 못하는 것이다.

둘째, 국내 신학교의 신학대학원마다 학기 중의 사경회나 채플 등의 시간을 통해서 경건 훈련을 하면서 목회자의 헌신과 사명, 교회 사역의 방향과 방법 등을 주제로 하는 설교는 흔히 들을 수 있지만, 성 윤리와 관련된 설교는 거의 들을 기회가 없다. 또한 기숙사 생활이 공동체 생활을 직접 경험하는 영성훈련의 장으로서의 기능을 하지만, 이 또한 성 윤리 이슈를 전문적으로 배우거나 직면할 기회는 거의 없는 편이다.

셋째, 신학교들마다 성희롱, 성폭력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교직원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 2회 성 관련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은 형식적인 교육에 그치고 있다. 교직원들도 학생들도 이 이슈에 대해 관심이 부족한 편이다. 이런 경향으로 인해, 상당수의 예비 목회자들은 성윤리 의식에 대해 제대로 교육받을 기회를 갖지 못한 채 신학대학원 과정을 졸업하게 된다.⁸⁾

6) 목회자가 교회 지도자로서 갖고 있는 힘을 이용하여 이성 교인을 성적으로 학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7) 심방은 여러 심방대원들이 함께 한 가정을 방문함으로 심방 받는 가정의 이성 교인이 목회자와 개인적인 친근감을 느낄 기회가 적은 반면, 개인 상담은 목회자가 이성 교인과 일대일의 상황에서 진행되는 관계로 전이 및 역전이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국내 신학교의 신학대학원 과정에서 성윤리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먼저, 전통적으로 신학대학원 과정의 전공필수과목에 성윤리 관련 과목이 없었기 때문이다. 서구 신학대학원 과정의 커리큘럼에 성윤리 과목이 거의 개설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 국내 신학대학원 과정의 커리큘럼에 그대로 반영된 점을 들 수 있다. 즉, 이론신학(성서신학, 조직신학, 역사신학, 기독교윤리학 등)과 실천신학(목회신학, 예배설교학, 목회상담학, 영성신학 등) 제 분야별로 개설할 수 있는 전공필수과목의 수가 제한되어 있어서 신학교마다 새로운 전공필수과목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그 자체로 상당히 어려운 구조 속에 놓여 있다.⁹⁾

둘째, 기독교윤리 전공 교수가 가르칠 수 있는 과목들이 전부 개설된 상태여서 더 이상의 과목 개설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이거나, 기존에 개설된 과목들보다 상대적으로 성윤리 관련 과목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거나, 혹은 성윤리 관련 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교수가 확보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¹⁰⁾

셋째, 신학교의 입장에서는 신학대학원 과정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이미 성윤리와 관련된 사항은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훈련된 상태로 입학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듯이 보인다. 혹은 성윤리 관련 과목이 기존의 전통적인 과목들보다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거나, 신학 내의 다른 주요 과목들을 잘 이수할 경우에 성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인식들이 신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성윤리 과목을 개설하지 않은 이유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신학대학원 입학을 위한 면접과정에서 후보자가 성적 유혹에 취약한지의 여부, 이전에 성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지의 여부, 질환적 차원에서 성 중독 상태에 빠져 있는지의 여부 등을 충분히 알아내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므로, 성적 문제점을 갖고 있는 학생이 신학대학원 과정에 들어와서 공부하는 기간 동안에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졸업하는 경우, 목회현장에서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를 갖고 있다.

넷째, 목회자가 목회현장에서 직면하는 성적 유혹 및 성적 탈선의 위험성에 대한 신학교 교수들의 이해 부족이 신학교에서 성윤리 과목을 개설하지 않은 이유가 될 수 있다. 상당수

8) 또한 국내 개신교 각 교단 내의 여러 기관 및 연구소들에서는 목회 및 교회성장 관련 세미나들에 대해서는 상당한 관심을 갖고 시행하고 있지만, 정작 목회자 자신을 돌아보고 성적 탈선을 막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성윤리 관련 세미나는 거의 제공하지 않고 있다. 단지 목회자의 성적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당회나 노회 재판국 및 총회 재판국에서 이런 사건을 다루고 있을 뿐이다. 즉, 예방적 차원의 장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고 이미 성적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 목회자에 대한 처벌 수위 조절 및 해당 목회자의 향후 진로 등에 대한 논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실정이다. 개신교 각 교단의 이런 구조적인 한계 자체가 곧 목회자들로 하여금 성적 탈선의 문제에 더 취약한 원인이 되고 있다.

9) 신학대학원 과정의 커리큘럼을 전면적으로 개편하지 않고서는 새로운 과목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쉽지 않은 구조 속에 놓여 있다. 최근 개신교 교단들과 신학교들마다 신학대학원 과정의 커리큘럼이 목회자 양성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신학자 양성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는 반성이 있으며, 이런 반성의 결과로 목회자 양성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과목들을 전공 필수과목에 포함하고 있다. 이는 성경공부, 설교, 상담, 심방, 행정 등 보다 실제적인 과목들의 개설을 의미한다. 그러나 신학교들마다 신학대학원 과정이 목회와 관련된 실제적 차원의 훈련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주장과 신학적 사고의 훈련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하는 경향이 있다.

10) 일반적으로 신학대학원 과정의 기독교윤리 전공필수과목은 '기독교윤리학 개론' 한 과목만이 개설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선택과목으로 개설되어 있는 신학교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의 신학대학교 교수들은 그 직무의 특성상 목회자가 직면하는 목회 현장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보다는 자신이 전공한 신학 분야 자체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에 집중하게 된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자연스럽게 목회자가 목회현장에서 직면하는 성적 탈선의 위험에 대해 고민하거나 이를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부족하게 되는 것이다. 신학교 교수들의 이런 현실적 상황이 신학대학원 커리큘럼 속에 성윤리 관련 과목이 거의 개설되어 있지 않은 원인이 될 수 있다.

다섯째, 궁극적으로 목회 현장에서뿐만 아니라 신학교 내에서도 성과 영성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사고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향은 일선 목회자들과 신학교 교수들, 그리고 신학생들이 성윤리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는 연결된 문제이다. 즉, 신학교 내에서는 신학대학원 과정의 학생들에게 소위 신학적 이론을 중심으로 하는 신학적 사고의 훈련, 실제로 목회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목회 방법론적 차원의 훈련,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중심으로 하는 개인의 영성적 차원의 훈련 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개인의 성윤리와 관련된 교육 및 훈련은 신학생들에게 부차적인 문제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는 듯이 보인다.

미국 신학교들의 성윤리 교육 현황

가장 최근에 미국 신학교의 성윤리 교육과 관련된 연구물로는 “신학교에서의 성윤리훈련: 성적 끌림의 감정을 다스리도록 학생들을 준비시키기”(2004)¹¹⁾라는 논문과 “성과 신학교”(2009)¹²⁾라는 보고서 두 개가 있다. 전자는 5개의 복음주의 신학교 졸업생 585명의 응답을 분석한 논문으로, 목회자가 교인들에 대해 가질 수 있는 성적 감정의 문제를 잘 관리하도록 도움을 주는 교육을 하기 위한 기초 연구라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이전의 다른 연구들의 결과와는 달리) 응답자들이 교인들과의 성적 친밀감에 관여하는 정도가 상당히 낮은 비율을 보여준다고 보고하고 있다.¹³⁾ 이런 경향은 미디어의 관심 증가, 교단들/신학교들이 신학생들에 대한 성윤리 관련 훈련과 책무성의 필요를 인정하려는 의도의 증가 등이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논문의 저자들은 이 조사의 결과에 대한 함의를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첫째, 복음주

11) Kathryn Rhodes Meek, Mark R. McMinn, Todd Burnett, Chris Mazzarella, and Vataliy Voytenko, "Sexual Ethics Training in Seminary: Preparing Students to Manage Feeling of Sexual Attraction," *Pastoral Psychology*, Vol.53, No. 1, Sep. 2004.

12) Kate M. Ott, *Sex and the Seminary: Preparing Ministers for Sexual Health and Justice* (Religious Institute on Sexual Morality, Justice, and Healing, Union Theological Seminary in the City of New York, 2009).

13) 응답자의 1%만이 교인과의 성적 친밀감에 관여했다고 응답했으며, 이 응답은 이전 조사들에서 나타난 목회자의 성행위에의 관여보다 훨씬 낮은 비율을 나타낸다. 또한 교인에 대한 성적 끌림을 표현했다는 응답자는 3.5%, 교인과 키스를 했다는 응답자는 4.2%로 나타났고, 응답자의 34.5%가 교인과의 성적 상상에 관여했다고 응답했다. "Sexual Ethics Training in Seminary", 69.

의 목회자들 대다수가 윤리적 탈선을 삼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교회와 교회 기구들이 목회자 성적 탈선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적 기회 및 성적 탈선의 희생자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예방을 위한 훈련자료를 개발하는 등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고 말한다. 둘째, 본 연구는 목회자 훈련에 관련된 자들이 성 이슈와 관련하여 전반적인 훈련의 환경을 증진시키기를 제안하고 있다. 셋째, 응답자들은 자신들이 졸업한 복음주의 신학교의 교수진에 대해 상당한 존경심을 표현하고 있다. 학생들의 교수진에 대한 존중은 성 이슈라는 민감한 문제를 교육할 때 효과적인 학습 환경을 창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넷째, 신학교 교수들은 목회자의 성윤리와 관련된 지속적인 연구를 계속해야 한다는 것이다.¹⁴⁾

이 논문은 미국 복음주의 교단에 속한 목회자들의 성적 탈선이 과거보다 상당히 줄어들었고, 그들의 성윤리 의식이 과거보다 높아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결과는 이 논문의 합의에서 서술하듯이 그동안 미국 복음주의 교단들이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성윤리 의식 향상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음을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문에 나타난 조사 대상자들이 5개의 복음주의 신학교 졸업생들이라는 것은 이 논문의 결과가 미국교회 전체 차원을 망라하지는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 점에서, 작년에 발간된 “성과 신학교”라는 보고서는 미국 내의 36개 신학교들/랍비 학교들에 대한 조사를 기초로 하고 있으며, 이 학교들에 의해 제공되고 있는 성 이슈들에서의 교육과 훈련을 평가한 보고서로서, 전자의 논문의 결과를 보완할 수 있는 자료로서의 가치를 가진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 보고서에는 조사 대상 36개 신학교에 나타난 성 교육 커리큘럼과 관련된 주요사항들을 다음과 같이 보여주고 있다. 먼저, 신학교들에서 제공하는 성윤리 관련 과정들은 전공 과정, 부전공 과정, 자격증 과정, 및 1년 과정 등 다양한 과정들이 제공된다. 둘째, 전체 36개 신학교 중에서 31개 신학교는 정기적으로 여성학 분야에서 1년 과정을 제공한다. 20개 신학교는 성윤리 과정을 제공한다. 또한 12개 신학교가 성적학대, 가정폭력 및 종교 전문가들을 위한 성 이슈에 관한 과정을 제공한다. 10개 신학교는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LGBT)학/ 동성애자(queer)학을 1년 과정으로 제공한다. 셋째, 신학교들에서 성 관련 1년 과정들은 주로 중진 교수들과 강사들이 가르치는 반면,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학/ 동성애자학은 주로 강사들이 가르치고 있다. 넷째, 성 관련 과정들은 주제에 따라 각기 다른 주기로 가르쳐지고 있다. 1년 과정들의 70%는 매 2년 마다 가르쳐지고 있고, 1년 과정들 중에서 종교 전문가들을 위한 성 이슈, 그리고 성적학대/가정폭력에 관한 내용을 해마다 가르치는 신학교는 3개 학교에 불과하다.

또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신학교들은 성에 대한 연구, 자기사정, 및 교역형성 등의 충분한 기회를 가진 미래의 성직자/종교지도자를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주장

14) "Sexual Ethics Training in Seminary", 75-77.

은 구체적으로 그 보고서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발견들에 기초되어 있다. 첫째, 조사된 신학교들의 90% 이상이 졸업을 위해 1년 과정의 성-관련 과정들을 요구하지 않는다. 둘째, 36개 신학교들 중 3분의 2가 종교 전문가들을 위한 성 이슈들에서의 과정을 제공하지 않는다. 셋째, 36개 신학교들 중 4분의 3은 레즈비언, 게이, 양성 및 트랜스젠더 연구 과정을 제공하지 않는다. 넷째, 신학교들은 트랜스젠더학이나 다른 성-관련 이슈들의 3배 이상으로 여성학 및 페미니스트 과정을 제공한다. 다섯째, 다음 세대 학자들은 성 이슈들을 언급하지 않는다. 여섯째, 그 보고서는 성윤리 훈련을 위한 여러 신학교들을 추천했지만, 다른 신학교들에게 성 관련 과정들을 강화하도록 요청했다. 일곱째, 이 연구는 종교 교단들이 성을 둘러싼 많은 충돌에 둘러싸여 있을 때, 다음 세대의 목사들과 다른 종교 전문가들은 이런 이슈들을 다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필자는 이 보고서에서 추출할 수 있는 주요사항을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정리해 보았다. 첫째, 미국 신학교들의 성윤리 교육 커리큘럼에 나타난 특별한 사항으로는 성윤리 관련 교육을 비교적 다양한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것은 1년 과정의 과목 개설 이외에도 전공 과정, 부전공 과정, 자격증 과정 등 다양한 과정이 개설되어 있다는 점이다.

둘째, 미국 신학교들에서의 성윤리 교육은 국내 신학교들에서의 성윤리 교육보다는 나은 편이지만, 위의 결과를 통해서 볼 때, 미국의 신학교들 역시 아직까지 그리 만족할만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즉, 현재까지 미국의 신학교들 역시 국내 신학교들과 유사하게 성과 신학 사이의 관계에 정통하여 자신과 교인들의 성적 건강을 이끌 수 있는 목회자를 양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¹⁵⁾ 이처럼, 미국 신학교들의 성윤리 관련 교육의 미흡은 그 자체로 최근 미국교회 목회자들의 성적 탈선을 결과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결국 국가나 문화에 관계없이, 목회자들에 대한 성윤리 교육과 훈련의 부족은 자연히 목회자 성적 탈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셋째, 이 보고서는 단지 목회자가 직면할 수 있는 성적 유혹과 성적 탈선의 문제뿐만 아니라 성에 대한 연구, 성 소수자에 대한 연구, 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트랜스젠더, 여성학, 및 성적 학대와 가정폭력 등 보다 광범위한 차원의 성 이슈들에 대한 질문들까지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국내 신학교에서 역시 단지 목회자 성적 탈선의 문제라는 좁은 의미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성의 다양한 영역들을 포괄적으로 교육하고 훈련하는 문제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성의 다양한 영역들에 대한 이해는 그 자체로 목회자 스스로 성윤리에 대한 이해를 높임과 동시에 성적으로 건강한 교인들로 이끌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고, 현재 진행

15) 미국의 5개 복음주의 교단 신학교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신학교에서의 성윤리훈련"(2004)이라는 논문에서는 복음주의 신학교 출신 졸업자들이 성윤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이전의 연구들보다 상당히 높은 윤리적 수준을 보여준다고 말하는데 비해, 이 보고서(2009)는 미국 신학교들에서의 성윤리 교육이 아직까지 그리 만족할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전자의 논문은 후자의 보고서에 비해 상당히 제한된 대상들에 대한 조사였던 관계로 성윤리 교육에 대해 보다 낙관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되고 있는 성 관련 이슈들에 대해 교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으로 올수록 성 관련 이슈가 점점 더 공적 토론의 주제가 아니라 사적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무엇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다. 교회가 이런 경향에 따라가다 보면, 목회자 역시 기독교적 성윤리 인식을 확립할 기회가 점점 더 없어지게 되고, 현재보다 더 성적으로 타락한 사회가 되는 것을 방조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그러므로, 성윤리 관련 이슈는 단지 개인의 취향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는 사적인 이슈가 아니라 공적 토론의 이슈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할 때, 성 이슈에 대한 보다 분명한 기독교적 입장을 제안할 수 있고 이를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

목회자 성윤리 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성

본고는 목회자 성적 탈선의 원인, 국내 신학교 및 미국 신학교들의 성윤리 교육 현황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현재 국내 신학교들에서는 신학생들에 대한 성윤리 교육의 중요성 자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며, 설령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하더라도, 현재의 신학대학원 커리큘럼대로라면, 성윤리 관련 과목을 개설할 여지가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반면, 미국 신학교들의 경우, 성윤리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신학교마다 개별적으로 혹은 신학교 간 연대에 의해, 성윤리 교육을 강조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렇다면, 국내 교단/신학교들에서 목회자/신학생 성윤리 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성을 어떻게 제안할 수 있을까? 필자는 본고에 나타난 미국 신학교들의 현황을 참고하여 국내 신학교들에서 시행할 수 있는 성윤리 교육의 방향성을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신학대학교는 신학대학원 과정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윤리 관련 과목을 개설해야 한다.¹⁶⁾ 당장 성윤리를 전공필수과목으로 개설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선택과목으로 개설할 수 있다. 또한 교단 총회 차원에서 교단 내의 신학교를 대상으로 성윤리 관련 과목을 신학대학원 졸업을 위한 필수과목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 이의 실현은 목회자 성윤리 의식 고취의 중요성에 대한 각 교단과 신학교의 인식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둘째, 신학대학원 과정에서 성윤리 관련 과목을 개설뿐만 아니라 성윤리와 관련된 설교, 특별강연, 포럼, 컨퍼런스, 개인상담, 토론, 성(윤리)관련 기관 견학 등 신학생들에게 성윤리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또한 신학교는 신학생

16) 이를 위해서는 성윤리 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기독교윤리 전공 교수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신학대학원 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국내 신학교들 중에는 기독교 윤리를 가르칠 수 있는 전임교수가 확보되지 않은 신학교들도 존재하고 있다. 그러므로 기독교윤리를 전공한 전임교수의 확보는 신학교가 목회자 후보자인 신학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장기적인 성윤리 교육을 위해서 선행되어야 하는 필수적인 조건이라 할 수 있다.

들뿐만 아니라 현장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이런 기회들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신학교과 교단 총회나 노회와 협력한다면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윤리 교육을 더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성윤리 교육은 보다 넓은 차원인 영성훈련(혹은 경건훈련)의 차원 내에서 시행하거나 그 훈련과 병행할 필요가 있다. 영성신학/기독교윤리학 교수들을 중심으로 신학생들에게 영성훈련 및 윤리적 사고와 행동에 대해 훈련할 기회에 자연스럽게 성윤리와 관련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기숙사 생활을 통한 공동체 훈련과 함께 영성훈련을 위한 조별 모임 등의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성윤리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 장기적 차원에서는, 영성훈련(경건훈련)과 성윤리 교육을 분리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할 때, 보다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교육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영성훈련과 성윤리 교육의 병행은 성윤리 교육이 영성 훈련이라는 보다 넓은 차원에서 이해될 때 보다 바람직한 영성과 도덕성을 함양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넷째, 성윤리 교육은 단지 신학생/목회자의 성적 탈선을 예방한다는 소극적 차원의 교육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성 일반, 성 소수자, 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트랜스젠더, 여성학, 및 성적 학대와 가정폭력 등을 포함하는 보다 광범위한 내용의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신학생/목회자 자신뿐만 아니라 교인들의 성적 건강에도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적극적 차원에서의 성윤리 교육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신학대학교는 신학대학원 재학생 및 일반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성윤리 전문가 과정’ 같은 특별과정을 개설하여 성윤리 전문가를 양성할 수도 있다.

다섯째, 넓은 차원의 성윤리 교육은 기독교윤리 전공 교수들이 타 신학 전공 교수들뿐만 아니라 교회 내의 성 관련 전문가들과의 협력 티칭을 통해서 보다 효과적인 교육이 가능할 것이다. 특히, ‘성윤리 전문가 과정’ 같은 특별과정을 개설하려면, 더더욱 이러한 협력 사역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여섯째, 신학생/목회자를 위한 효과적인 성윤리 교육을 장기적 차원에서 고려한다면, 신학자들이 개신교 성윤리와 관련된 보다 깊이 있는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서구 신학계와 달리, 현재 국내 개신교 신학계 내에서는 목회자의 성윤리와 관련된 논문은 거의 없다. 이런 현실은 한국 신학계가 ‘교회를 위한 신학’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교회 내의 실제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신학 연구에는 상당부분 무관심해 왔다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그런 점에서 기독교윤리학자들뿐만 아니라 국내 신학자들은 현재 한국교회 내에서 가장 심각한 이슈 중의 하나인 목회자 성윤리를 신학적 주제로 삼아 깊이 있는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¹⁷⁾

17) 신학자들이 성윤리와 관련된 깊이 있는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회, 노회, 총회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목회자의 치유와 예방의 관점에서

홍인종 | 장로회신학대학교 목회상담학 교수

들어가는 말

좀 오래된 통계이기는 하지만 미국의 유명한 리더십 잡지 [Leadership Journal, 1999년 봄, (목회와 신학, 1999년 5월 번역 게재)]의 통계에는 사역 기간 중에 배우자 아닌 사람과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 미국 목회자들의 88%가 '그런 적이 없다'고 답했다. 또한 사역 기간 중 배우자 아닌 사람과 성관계 외의 성적 접촉을 가진 적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 82%가 '아니다'라고 응답했다. 결혼한 남자의 50%, 결혼한 여자의 40%가 혼외정사 경험이 있다는 하버드 대학의 한 통계와 비교해 볼 때(팀 라헤이, 재인용. 1992:81), 이것은 아직도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성적인 문제에서 정직함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18%의 목회자들이 배우자 외에 사람과 부적절한 성적 관계를 가졌다는 것을 뜻하며, 높은 도덕적 탁월성을 요구받는 목회자들에게는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님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비록 세상과 비교하면 도덕적 순결의 우위를 보이고 있지만 동시에 무시할 수 없는 정도로 성적인 문제가 교회에 가까이 있음을 경고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것은 미국 통계이지만 필자의 상담 사례 가운데 교회내에 성적 문제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사실 목회자를 포함하여 그 누구도 유혹과 죄로부터 완전히 면역된 사람은 없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유혹에 더 쉽게 노출되며 성적으로 잘못된 관계로 발전하는 경향이 높을 수 있다. 이러한 성적 타락은 신뢰가 전제되고 어느 한 쪽이 더 우월한 힘을 갖는 불균형 관계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종종 일어난다. 예를 들면 의사, 교사, 목사 등이다. 환자들은 자신의 고통과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 의사를 신뢰해야하며, 자기 자신의 치부를 노출해야 도움

과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교사는 배우는 학생들에게 신뢰를 받을 뿐 아니라 보다 더 우월적 위치에 있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부적절한 성적인 요구를 하기가 쉽다. 목회자는 영적 문제의 진단이나 영적 지도를 하는 차원에서 의사처럼 신뢰의 관계에 있어야 하며, 동시에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역할에서 교사처럼 우월적 위치에 있으므로 자신의 힘을 남용하여 성도와 성적인 부도덕한 관계로 발전할 위험성이 높다.

I. 목회자의 성문제와 그 원인들

아키발트 하트는 성적 타락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로 상담관계(상담 목회자와 교인간의 친밀감), 목사의 이미지(이성 성도에게 매력적임), 성적 충동을 부인함, 가정의 상황(불행한 결혼 생활), 그리고 인생의 시기(예/ 중년의 위기) 등을 말한다(1994:183-185). 한편 팀 라헤이는 성 범죄에 빠질 수 있는 요인들을 성적매력이라는 영향력, 유혹하는 여성의 영향력, 감정 결합의 영향력 등 세가지를 지적한다(1992:43-50). “성적매력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목회자는 성도들을 상담하고, 돌보고, 이해해주는 자애로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성도들이 쉽게 목회자에게 매료되고 따라서 목회자는 유혹받기 쉽고 타락하기 좋은 위치에 있다는 것이다. “유혹하는 여성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목회자와 상담을 하는 24%의 여성 중에는 순수하지 못한 동기로 목회자에게 접근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감정 결합의 영향력”은 상담을 통해서 성도와의 감정적인 결합은 간음으로 가는 첫 번째 단계로서 목회자가 아내와의 감정적 결합이 결핍되었을 경우에 많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팀 라헤이는 도덕적 타락의 요인이 되는 자세로 영적 자만, 감독받는 것에 대한 저항, 분노, 목회 성공에 대한 강박관념 등으로 인한 일 중독을 지적한다(51-72). 이것들 외에 목회자가 어렸을 때의 성경험이나 춘화(포르노) 탐닉 등에 노출 또는 중독되었을 경우에 성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쉽게 추측할 수 있다.

다윗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지만 군대와 함께 있지 않고 홀로 왕궁에 있을 때 유혹이 찾아왔다(삼하 11:1-5). 삼손은 미녀 드릴라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여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삿 16:17)고 성경은 기록한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좇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좇아온 것이라”(요일 2:16)고 경고한다.

결국 목회자가 영적으로 둔감하거나, 스스로를 적절하게 조절할 수 없는 성격적, 심리적 취약성을 갖고 있거나, 어린 시절 성적인 유혹에 노출되었거나 가정적으로 불행 또는 배우자와 감정적인 결합이 결핍되어 있거나, 또는 교인, 목회자라는 신뢰할 만한 관계에 대한 과

신이 유혹적 상황에 쉽게 빠져들게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목회자의 성적 타락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그 책임은 목회자 당사자의 몫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조금만 정직하다면, 타락은 스스로 선택했기 때문이고 그 누구도 성적인 것을 강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II. 성적인 문제에 대한 목회자의 회복과 예방

1. 성적인 문제에 빠진 목회자들을 위한 회복

성적인 범죄에 연루된 교회지도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먼저 성적인 범죄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이다. 왜냐하면 “성적인 범죄는 대개 다른 죄들을 동반한다. 간음한 사람은 최소한 십계명 중 다섯 가지 이상을 범하게 된다. 그는 하나님보다 자신이 욕망을 더 우위에 두고, 도적질하고, 탐하고, 거짓 증거하고, 간음하지 말라는 분명한 계명을 깨트리는 것”(어윈 루썰, 1989:185)이기 때문이다. 성경은 “... 쾌락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 보다 더 하며...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딤후 3:5-7)고 가르친다. 잘못된 성적 타락에 대해서 “돌아서라”고 말씀하신다. 성적 타락은 영적인 회개가 먼저 있어야 한다(고든 맥도날드의 “무너진 세계를 재건하라”를 참조할 것. 이 책은 짧은 성적 외도 후에 그가 철저한 회복의 기간을 갖고 어떻게 사역을 회복했는지를 고백한 책이다). 또한 적절한 영적 멘토(Mentor)의 도움을 받아 일정 기간 회복의 기간을 가져야 한다(팀 라헤이의 “목회자가 타락하면”의 후반부를 참조할 것). 진정한 회개는 영적 12단계에서 지적하듯이 하나님과의 화해 뿐 아니라, 자신과의 화해, 피해자와의 화해, 가족, 공동체, 이웃과의 화해를 포함하는 긴 과정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혼외의 부적절한 성관계는 갖지 않았지만 그러한 유혹이나 상황에 노출되어있는 목회자들은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네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갈 6:1)는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 잘못된 형제들을 바로잡아 회복하도록 도와야 하며,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 영적인 각성과 민감함을 유지하도록 힘써야 한다. 이 일을 위해서 몇 가지 제언을 한다면 첫째는 자신의 결혼 생활에 우선순위를 두고 가정에 열정이 식지 않게 하여야 한다. 둘째 성적인 것과 연관된 취약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도움을 청하여야 하며 기도의 동지를 만들어야 한다. 셋째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책임 있는(accountable) 동료들과 교제를 나누며 점검을 받아야 한다. 넷째 마귀는 속이는 영이기 때문에 최악의 상태를 가정해야 한다(리차드 엑슬러, 1995: 148). 왜냐하면 마귀는 그 정도는 괜찮다고 속삭이며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속이기 때문이다. 다섯째 정욕은 대적해야 할 것이 아니며 요셉처럼(창 39:13) 피하여야 한다(딤후 6:11-12). 여섯째, 진짜 남자는 책임을 질 줄 알기 때문에 추문 거리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런던 & 와이즈만, 1997: 298-299). 따라서 스스로 적절한 울타리를 만들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정직하게 점검해야 한다. 왜냐하면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전 10:12)고 성경은 경고하기 때문이다.

2. 목회자의 성적 타락의 예방

목회자의 성적 타락을 예방하기 위해서 몇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사탄은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며 교회, 특별히 목회자의 파멸을 위해서 성을 사용하고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 목회자의 사역은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상담하고 대화하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신의 인간적 한계를 넘어 과도하게 관여하거나 능력의 부족으로 죄의식을 갖게 되면서 감정적 결합의 상호작용이 성적 친밀감으로 발전할 수 있다. 즉 목회자와 성도가 서로의 연약함을 나누다 보면 정서적, 성적으로 쉽게 가까워질 수 있다. 또한 신뢰를 전제로 한 관계이기 때문에 유혹과 위험을 무시할 수 있다, 게다가 목회자와 성도의 힘의 불균형 때문에 호의나 배려를 성적 매력이나 관심으로 착각하거나 오해할 수 있다. 목회자의 가족생활 주기와 목회성공지향적인 과도한 사역 활동이 부부 관계를 소원케 함으로 친밀감에 대한 욕구가 이성과의 성적 타락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런던과 와이즈먼은 목회자가 이성 상담을 할 때 조심해야함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자신은 유혹을 받지 않을 만큼 강하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십시오. 절대 안전이란 없습니다. 스스로 안전 장치를 마련하십시오. 유혹을 받는 상황을 잘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설 것이라고 믿는 때가 바로 넘어지기 쉬운 때입니다”(1997:296).

성적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를 가르쳐 준다(잠언 6:20-35).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이 다닐 때 인도하며 잘 때 보호하며 깰 때에 더불어 말씀하겠다고 약속하셨다(22절).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악한 여인으로부터 지킬 것이므로 여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고 안목의 정욕을 조심하라(23-25절)고 명령하신다. 결론은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 서야 어찌 그의 발이 데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6:27-29)이다. 목회자의 성적 타락은 어렸을 때의 상처나 낮은 자존감 등 인격 장애, 일 중독, 부부갈등, 목회자에 대한 과도한 요구와 성공지향적 목회 환경, 사탄의 유혹과 유혹하는 이성 등에서 다양한 원인을 설명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목회자의 선택이며 따라서 전적으로 목회자의 책임일 수 밖에 없다.

3. 성적으로 타락했던 목회자의 목회 복귀

목회자가 성적으로 타락했을 경우 목회로 돌아갈 수 있는지의 회복에 관한 많은 논쟁이 있다. 왜냐하면 성적 실패의 결과가 너무나 파괴적이기 때문이다(어윈 루저, 1989:185):

성(性)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뗄 수 없는 친밀한 부분이지만, 일단 이 문제에서 실패하면 반드시 죄책감과 수치심이 따르게 된다. 간음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생애에 끊임없이 죄의 결과들을 상기하게 하는 요소를 넣게 한다.

성적인 범죄는 대개 다른 죄들을 동반한다. 간음한 사람은 최소한 십계명 중 다섯 가지 이상을 범하게 된다. 그는 하나님보다 자신이 욕망을 더 우위에 두고, 도적질하고, 탐하고, 거짓 증거하고, 간음하지 말라는 분명한 계명을 깨트리는 것이다.

다윗은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불륜의 관계를 맺고 나서 후에 회개하면서 쓴 시편 51편에서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시편 51:3)고 고백한다. 성적인 범죄를 한 목회자는 죄책감과 수치심으로 자신을 용서하는데 많은 고통을 받고, 그의 사역에 엄청난 제한을 받으며, 가족들과 성도들에게도 엄청난 아픔을 주게 된다. 다시 말하면 성적 타락 이전과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며, 타락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교회 역사에 보면 성적 타락을 경험한 후에 회복한 목회자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이것은 성적인 문제의 파괴력이 그 만큼 절대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형제들 중에 잘못된 자를 바로 잡아야 하고(갈 6:1-2), 성적으로 타락해서 나실인의 서약을 깨고 수치를 당하는 삼손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던 하나님이시기에 성적으로 넘어진 목회자에 대한 목회 회복의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 그러나 타락한 목회자가 설령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 그리고 재현신 등을 통해서 목회로 복귀해도 이전의 남편, 아버지, 목회자로서의 리더십에 큰 손상을 입었기 때문에 그의 사역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문제는 어떠한 절차와 단계가 필요한가이다.

첫째는 복귀 이전에 진정성이 있는 회개와 목회 현장에서 떠나는 유예기간이 있어야 한다. 죄는, 특별히 성적인 타락은 드러나기 전까지는 숨기려하기 때문에 자발적 회개는 거의 없다. 따라서 발각되고 난 후에 회개의 절차를 어떻게 갖느냐가 목회 회복의 전제 조건이다. 어떤 목회자는 하나님께 회개하였기 때문에 이미 용서받았다고 하며, 스캔들 일주일만에 다시 목회로 돌아갔다가 다시 같은 죄를 반복한 슬픈 사례가 있다. 회개에는 충분한 기간이 필요하다. 또한 유예기간은 사안에 따라 달라야 한다. 예를 들어 부적절한 관계의 기간(지속성), 일회성 또는 반복성 여부, 그리고 성적 타락의 치명성(여러 사람과 관계, 동성애, 미성년자 성학대, 직업 여성) 등에 따라 심리치료나 정신과 치료, 증상에 따른 약물 치료 등을 병

행할 수도 있다.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 뿐 아니라 자신을 전인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영적 지도자나 전문 상담자와 회개와 회복의 시간을 함께 해야 한다.

두 번째는 회개는 당사자들(피해자, 교회, 성도, 가족 등)에 대한 용서구함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고, 이 때 그의 회복을 도울 수 있는 의지할 만한 그룹(accountable group)이 있다면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목회자의 타락은 주로 목회자의 교만이나 자기 과신이 동역자 그룹으로부터 이탈하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회복은 영적 12단계 그룹처럼 죄를 고백하고 그의 회복을 위해 진정으로 고민하며 지지해주는 안전한 공동체가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세 번째 성적 무너짐을 경험했던 고든 맥도날드는 목사 사임 후에 어떻게 다시 결혼생활을 정상적인 관계로 회복시킬 수 있었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한다. “우리는 함께 사역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목회자들에게 일은 끝이 없으며, 따라서 원만한 결혼생활을 위해서는 함께 사역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1995:68). 물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부부가 성적 타락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할지 모른다. 그러나 부부가 함께 사역에 동참하면서 서서히 회복의 계단을 오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회복에 가장 중요한 단계는 교회로 부터의 회복과 사역에서의 재청빙이다. 목회자로서의 부르심은 개인적인 소명과 신학적 훈련 등이 있어야 할 뿐 아니라 반드시 교회(성도)의 부르심이 있어야 교단적 안수를 받아 공식적 목사로 활동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일정한 유예기간을 거쳐서 철저한 회개, 상담과 영적 지도, 부부관계의 회복 등이 있다고 해도, 그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그를 사역자로 청빙하는 과정이 있어야만 목회 복귀가 성경적이라 할 수 있다.

나가는 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롬 11:29). 하나님께서는 비록 성적으로 타락한 목회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한, 후회하시지 않는다. 이 뜻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끄러움, 성적 범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돌이키면 다시 두 번째 기회를 주어서 후회하지 않으실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러나 그것은 성도로서의 회복이지 목회자로서의 목회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목회자들은 스스로 돌아보아 유혹의 단계를 거쳐 간음으로 가는 과정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브루스 윌킨슨의 “거룩 vs 유혹” 책을 반드시 참조할 것).

또한 목회자를 포함한 모든 성도가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비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를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를 어미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를 일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딤후 5:1-2)는 말씀을 실천해야 한다. 나아가 성경은 목회자와 교인 모두에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엡 5:3)고 말씀하신다. 이 마땅한 말씀에 목회자가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할 때 성도와 교회의 순결함은 유지될 것이다. 그 때에 성문제로 갈등하고 분열됨이 없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회자와 성도의 진정한 교제가 회복될 것이다.

참고 문헌

- 고든 맥도날드 저. 박가영 역. 무너진 세계를 재건하라. 하늘사다리. 1995.
- 리차드 엑슬러, 마크 갈리, 존 오트버그 공저. 장미숙 역. 유혹을 이기는 목회자. 은성. 1995.
- 브루스 월킨슨 저. 정인홍 역. 유혹의 시대를 거룩하게 사는 그리스도인의 비결: 거룩 vs 유혹. 도서출판 디모데. 1998.
- 아키발트 하트 외 공저. 김진우 역. 목회 상담, 어떻게 할 것인가? 핏불. 1995
- 어위 루쨌 저. 유재성 역. 목사가 목사에게. 나침반사. 1989.
- 이원희 외 7인 공저. 성희롱 예방에서 대처까지. 한국 생산성 본부. 1999
- 팀 라헤이 저. 황승균 역. 목회자가 타락하면. 생명의 샘. 1992.
- H.B. 런던 & 닐 와이즈먼 저. 이길상 역. 목회자가 목회자에게. 생명의 말씀사. 1997.
- 홍인중. 목회자와 사모가 겪는 갈등, 무엇이 문제인가? 목회와 신학. 1999년 5월호 (74-81)
- 홍인중. 교회안의 성적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신앙과 문화. 2000년 7월호 (18-22)
- 홍인중. “목회자: 성적인 유혹, 타락 그리고 회복”. 목회와 신학. 2010년 11월호

*** 본 글은 필자가 이미 썼던 글들을 중심으로 포럼을 위해 재정리한 것입니다.**

교회개혁실천연대



한국교회 개혁에 뜻있는 성도들과 목회자에 의해 2002년 11월 24일 창립되었으며, 한국교회의 개혁과 교회를 통한 사회개혁을 지향합니다. 교회 내의 구조적인 모순을 해결할 대안을 연구하여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일(구조개혁운동), 교회상담과 이에 따른 개 교회 및 교계 현안에 대응하는 일(현안대처운동), 성도 안에 자리잡은 왜곡된 가치관과 의식을 성경적인 틀로 교육하는 일과 개안교회들 간의 네트워킹(협력지원운동)등 세 가지 방향으로 아래와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구조개혁운동 ■

한국교회에 공통적으로 놓여있는 잘못된 구조와 토대를 바로잡고 대안을 제시하는 일을 합니다.

- **민주적 정관 갖기 운동** 교회의 권위주의 타파와 권력의 집중을 예방하기 위하여 직분별 임기제 도입, 민주적 의사결정구조, 재정의 투명성을 바탕으로 한 모범정관(당회형/사역자 회의형)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 **건강교회 재정운동** 무원칙적이고 불투명한 교회재정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2007년 11월 <재정조례>를 발표했고, 재정세미나 및 개 교회 재정컨설팅과 납세상담, 재정실무자(감사)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교단총회 참관활동** 각 교단총회가 건강하고 생산적인 정책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매년 주요 교단총회를 참관하여 정책을 제안하고, 정책 심포지움을 진행합니다.

현안대처운동 ■

분쟁에 휩싸여있는 개별 교회들의 문제와 교계 전체적인 문제에 대응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부설 교회문제상담소 운영**
- **개 교회 및 교계·사회 현안에 대한 활동**(사랑의교회 건축반대운동, 국민일보 등)
- **한국교회 개혁을 위한 월례기도회**

협력지원운동 ■

뜻을 함께하는 개인 및 교회와의 연대운동입니다.

- **교회개혁네트워크운동:** 개혁교회네트워크, 전국네트워크, 수원/부산/광주/대구 지역모임 지원, 전국투어 '칠천인찾기 프로젝트'
- **교육사업:** 교회개혁제자훈련, 신앙용어바로알기, 평신도를 위한 교회론/구원론 등 교회개혁아카데미, 세미나 등
- **연대사업:** 성서한국, 기독교사회포럼, 교회의 날, 생명의강지키기기독인행동 등

■ 동참하는 방법은

1. 회원가입

- 관심회원: 개혁연대의 취지에 공감하여 가입하고, 메일링 서비스를 받는 회원
- 정회원: 관심회원과 동일하며, 매달 일정회비를 후원함으로 소식지 및 자료서비스를 받는 회원

2. 자원활동

- 사업관련 자료정리 및 조사, 행사 진행 도우미, 총회 모니터링 등 현장 참여

■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 온라인 교회개혁아카데미 동영상 강의를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 개혁연대의 다양한 회원행사, 회원모임, 월례기도회 등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개혁연대 활동을 담은 이메일뉴스레터, 소식지 '공감(共感)'을 보내드립니다(정회원).
-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정회원 수강료 할인).

■ 후원을 하시려면

- **CMS:** 금융결제원이 회원께서 회비로 약정하신 금액을 자동 인출하여 교회개혁실천연대로 입금해주는 방법으로, 회원께서 직접 은행에 가셔야 하는 불편을 덜어드립니다(후원시 CMS를 권장합니다).
- **계좌이체:** 회원께서 직접 은행에 가셔서 자동이체를 신청하시는 방법입니다.
- **교회개혁기금(세금공제용):** 본 단체와 (재)한빛누리의 협력사업인 교회개혁기금을 통해 후원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연말 기부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국민은행 093401-04-088670(예금주:(재)한빛누리)

■ 후원계좌안내

예금주 : 박득훈(교회개혁실천연대)

- 우리은행 : 880-088854-02-101

- 국민은행 : 484201-01-102926

- 하나은행 : 103-910079-49907

예금주 : 교회개혁실천연대

- 외환은행 : 067-13-22235-4

- 우 체 국 : 013755-01-004153

- 농 협 : 044-01-107346

■ 기타 회원가입 및 후원 안내

담당 김종미 실장: ☎ 02-741-2793, ✉ protest@protest2002.org

주소_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374-1번지 307호 / 홈페이지_www.protest2002.org

기독교윤리실천운동



2010 기윤실사역열매신뢰나무

2010 기윤실 사역은 하나님의 은혜와 후원교회, 회원님의 기도와 격려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1987년 시작된 기윤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정통적 기독교 신앙을 기본이념으로 복음에 합당한 윤리적 삶을 통해 세상 속에서 신뢰받는 기독교인과 교회가 되도록 섬기며, 타자를 배려하고 환대하는 문화를 통해 생명과 평화의 공동체를 만든다"를 사명으로 합니다.

주소_서울시 용산구 한강로1가 217 세대빌딩 401호
 전화_02-794-6200 / 팩스_02-790-8585 / 홈페이지_www.cemk.org / 이메일_cemk@hanmail.net

바른교회아카데미



바른교회아카데미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바른 교회, 깨끗하고 투명하고 건강한 교회를 지향합니다. 우리는 성서적이고 역사적인 바른교회상을 연구하고 정립하여,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도구로 쓰임 받도록 힘써 돕고자 합니다.

바른교회아카데미의 활동

■ Research / 연구

1. 연구위원회 세미나 : 한국교회가 당면한 주요 이슈들에 대해 초교파로 구성된 신학자 연구위원들의 논문발표와 토론으로 방향성을 정립하는 정기 세미나 개최(년 2회)
2. 연구 프로젝트 : 교회가 당면한 이슈나 주제들에 대해 학제간 연구로 진행되는 실천적 학술 프로젝트 진행

■ Education / 교육

1. 평신도 강좌(성서 및 신학 강좌) 및 수련회
2. 목회자 세미나 및 포럼
3. 신학생 : 장신대 목회실습 및 신학생 해외 연수

■ Campaign / 캠페인

1. 교회재정건강성운동(www.cfnet.kr) : 교회개혁실천연대,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나눔과섬, 한빛누리와 함께 하는 재정투명성의 제도적 정착을 위해 교육과 운동
2. 교회신뢰회복네트워크(www.trustchurch.net) : 교회가 한국사회로부터 신뢰받는 공동체가 되도록 기운실을 비롯한 여러 교회와 단체가 2007년 조직한 연합 운동

■ Communication / 소통

1. 회보(GoodChurch Report)
 2. 웹사이트 www.goodchurch.re.kr 및 블로그 <http://gcacademy.tistory.com>
- 연구위원 : 이형기(연구위원장), 송인설(실행총무), 강성열, 권연경, 김기현, 김동춘, 김명용, 김세광, 김승호, 김원배, 김은혜, 김주한, 김판임, 류장현, 박경수, 박상진, 박정수, 배현주, 서원모, 송병현, 신원하, 안택윤, 양낙홍, 윤철원, 이승렬, 이정숙, 임희국, 전성민, 정재영, 조병하, 조석민, 조성돈, 최형근, 한국일, 현요한

주소_서울시 중구 남산동 2가 19-8번지 청어람6층

전화_02-777-1333 / 팩스_02-319-1103 / 홈페이지_www.goodchurch.re.kr / 이메일_gcacademy@hanmail.net



교회개혁실천연대
www.protest2002.org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
www.trusti.kr



바른교회아카데미
www.goodchurch.re.kr